

서대문구 자치입법 개선방안 연구

2019. 10.

서대문구의회 자치법연구원



제 출 문

서대문구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서대문구의회가 (사)자치법연구원에 의뢰한
「서대문구 자치입법 개선방안 연구」 위탁과제의 최종보고
서로 제출합니다.

2019. 10.

책임연구원 : 조정찬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공동연구원 :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승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승미 (동양대학교)

하민정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성윤희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3
I. 연구방향	3
1.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규범정합성 제고	3
2.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구성체계 점검	4
3. 서대문구 자치입법능력과 정책입법기능 향상	5
II. 연구내용과 방법	6
1. 연구내용	6
2. 연구방법	7
제2장 서대문구 자치법규 현황	11
I. 量에서 質중심으로	11
II. 현황	12
1. 개관	12
2. 구성체계	18
3. 기타 - 위원회	23
III.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	29
1. 행정서비스 유형	29
2. 인적 분야	40
3. 물적 분야	49
4. 행정내부 분야	51
5. 기타	54
IV. 소결	57
제3장 서대문구 자치법규 개선	61
I. 기본방향	61
1. 전수조사 및 문제유형별 개선방안 제시	61
2. 서대문구의 미래지향 고려	61
II. 주요 개선사항	63

III. 개별적 검토	65
A. 의회운영위원회	65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5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인조례	67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68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70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종합상황실운영규정	72
B. 행정복지위원회	73
a. 감사담당관	73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73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75
b. 교육지원과	76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76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78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82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86
c. 문화체육과	90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	90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92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3
1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95
1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	96
1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직제규칙	97
1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직제규칙	98
d. 민원여권과	99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99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01
e. 보건위생과	103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103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104
f. 복지정책과	105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105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108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0
g. 사회복지과	111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111
2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113
h. 아동청소년과	115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15
i. 어르신복지과	116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116
j. 어르신청소년과	117
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117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9
k. 여성가족과	122
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122
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124
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25
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126
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127
l. 의약과	128
3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128
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31
m. 자치행정과	133
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 조례	133
n. 정책기획담당관	135
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135
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137
4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138
4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39
4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140
4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141

4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에 관한 규정	142
o. 지역건강과	143
4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143
4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8
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150
p. 행정지원과	152
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152
5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인계인수규칙	153
5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	154
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55
5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157
5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159
5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60
5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161
q. 홍보과	162
5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규칙	162
C. 재정건설위원회	164
a. 건설관리과	164
5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164
60.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167
6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170
6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점개선자율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172
b. 건축과	173
6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173
c. 경제발전기획단	175
6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175
6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규칙	177
6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180
d. 교통관리과	182
6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182
e. 교통행정과	183

6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183
6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185
70.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186
71.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90
7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191
7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92
74. 서울특별시서대문구Green-Parking2006조성사업주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193
f. 기획예산과	194
7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194
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록관 운영 규칙	195
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196
7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197
7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98
8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99
8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201
g. 도시관리과	202
8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202
8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203
h. 사회적경제과	206
8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6
8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212
I. 세무과	213
8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213
8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215
8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17
8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221
90. 서울특별시서대문구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224
j. 안전치수과	226
9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226
9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228
9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레	231
9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및 조 례시행규칙	232
k. 일자리경제과	233
9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3
9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235
9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236
9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37
l. 자치행정과	238
9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38
1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240
1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41
10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	243
m. 재무과	245
1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45
1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247
10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250
10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253
10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254
n. 주택과	255
1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255
10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58
o. 지역활성화과	260
1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60
p. 지적과	262
1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칙	262
1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64
q. 청소행정과	266
1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	266
1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68

1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69
1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271
1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273
1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276
119.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281
r. 토목과	282
1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282
1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283
1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284
12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포장관리규칙	287
12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안등관리규칙	288
12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289
12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정	292
12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기술자문단운영규정	294
s. 푸른도시과	295
1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95
t. 환경과	297
1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97
 제4장 향후과제	 305
I. 협력적 자치입법시스템 구축	305
II. 자치입법 데이터의 구조화와 지식관리	306

○ 제1장 연구개요



제1장 연구개요



I. 연구방향

1.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규범정합성 제고

-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향해가는 오늘날 분권과 자치의 본격적 확대는 성년 지방 자치의 시대적 요청임
- 자치행정 자치재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자치입법이야말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자치권을 신장시키고 주민의 기본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중요한 법작용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치입법권이 확대될수록 국가법 전체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비중도 커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실정법체계상 규범정합성 확보 또한 중요하게 됨
- 자치법규가 국법 전체와의 관계에서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안고 있거나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게을리하거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치법규가 존재한다면, 이는 지방분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주민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할 것임
- 자치법규 제정 당시에는 상위법령에 합치되더라도 상위법령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자치법규도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좋은 자치법규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제·개정 작용 즉, 자치법규의 유지보수 내지 현행화가 불가피함
- 자치법규가 합법성 내지 규범정합성 제고를 통해 국가적 정책이나 입법 흐름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나아가 지역상황과 지역의사를 잘 반영하는 정책입법과 지식입법을 지향해가는 것 또한 중요함
- 격변기의 자치입법이 상위법령을 따라하는 수동적·소극적 입장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능동적으로 다가오는 변화와 불확실성에 맞닥뜨릴 때, 자치입법은 국가적 입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미래에 대처하는 입법선봉 역할도 할 수 있음

- 선도적인 자치입법이 형식적으로는 상위법령에 반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타당하다면 그러한 자치입법이 가능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자치입법이 새로운 규범수요에 적극적 입장으로 임할 때, 그 경험을 활용하는 만큼 상위법령의 규범력 제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임

-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관계가 이러하기에 필요하다면 자치입법은 시범법 모델법 지역법 등의 선도입법이기도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이러한 노력과 시도는 그 자체 자치입법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거리 실천태로서의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임

-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목표 하에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임

2.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구성체계 점검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를 조직법적 관점에서 소관부서의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소관부서의 명칭 및 그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하면서도 상이함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국가법령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자치법규 분류검색에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작용을 제44개로 분류하고 그 중에 하나를 ‘지방자치’로 하고 있음

- 자치법규의 체계를 주민의 관점에서 작용법적으로 접근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분야에서 자치법규가 제·개정되는지 어느 분야에서 자치법규의 입법화가 필요한지를 찾아내기 용이함

- 특정부서의 업무에 관련된 자치법규가 많고 내용이 복잡할수록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낮아질 수 있음

- 서대문구 자치법규는 총 414개이며 조례 265건, 시행규칙 102건, 훈령 43건, 예규 4건으로 확인됨(2019.9.23.,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방문)
- 주민은 종래의 행정 객체 내지 대상에서 행정서비스 이용자 단계를 넘어 행정참여자나 협력자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주민의 입장을 고려할 때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유형별 분류도 바람직하며, 그 외에도 주민의 연령, 특성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 분류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됨
- 이러한 자치법규의 체계화 시도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관리의 편의성과 주민의 접근성 제고, 제도개선이나 정책도입 성과표출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

3. 서대문구 자치입법능력과 정책입법기능 향상

- 분권과 자치가 확대되면서 자치입법은 국가시책, 법령 개선 등과의 연동·유기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법규입안·운용능력의 개선, 자치법규의 체계·내용구성 및 법규의 질적 수준 제고가 중요해지고 있음
- 법치주의, 민주주의, 기본권 실현, 주민복지 증진, 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 등의 관점에서,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관련 법규와의 법체계적 측면, 법규로서의 규범형식적 측면, 민주적 입법절차 및 입법과정상의 주민참여적 측면, 그리고 자치법규가 담아야 할 입법의 목적이나 구체적인 내용의 측면 등에서, 형식적·실질적으로 관련 요소들을 잘 갖추거나 또는 이를 지향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제·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세계적 추세로서 지방화시대의 도래, 지방자치제도의 지속 발전, 주민과 지역사회의 주인의식 제고, 지방으로의 행·재정권한의 이양 확대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주체성 및 지방자율성이 강조됨
- 이에 따라 지방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축소 내지 조정, 중앙집권식의 과도한 국

가법령 선점의 완화 등이 요구되고, 그에 비례하여 지역사회의 법으로서 지방행정을 근거지우고 뒷받침하는 자치법규의 역할이 증대됨

-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자치입법에 반영하면서 동시에 잘 설계된 정책을 법제화한다면, 서대문구 자치법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과 정책을 밀면서 당기는 견인차 역할도 적극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인적자원의 적재적소화, 관·학·연 융합기반의 협업프로그램 상시 가동, 지방 차원의 전문 법제인력 충원, 법제·법무전담조직의 구조 개편과 기능 활성화, 법제담당 직원·정책담당자·지방의원의 법지식과 전문성 함양 등도 중요함

II.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 서대문구 조례 265건, 규칙 102건, 훈령 43건, 예규 4건을 전수 조사하여, 분야별 조례, 규칙의 현황을 분석하고 조례, 규칙 제·개정·폐지 연혁 및 특징을 고려하여 자치법규의 규범합치성을 검토함

- 상위법령 위반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난 자치법규, 상위법령의 제·개정·폐지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반영된 자치법규, 적용대상 부재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자치법규 등을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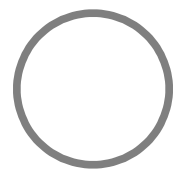
- 위임법령과 조례의 연관성 및 위임한계를 기초로 기관위임·단체위임사무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관련된 분류를 고려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한 자치법규의 법불합치성을 분석함

- 분석결과 종합 및 문제된 자치법규의 유형별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자치입법의 체계정합성과 규범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되,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자치법규 필요성도 고려함

-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규범적 검토에 입각한 개선방향 및 개정조문안을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향후 입법과제 및 미래지향적 정책 제언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서대문구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와 유형별 분석에 기반하여, 법적합성, 입법 실효성, 자치사무의 정책적 타당성, 입안심사기준 합치성, 규제의 적절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 발굴된 모든 사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과 법개정안을 발굴·제시하되, 필요시 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과 비교하며 분석값을 도출함
- 접근 관점의 객관성·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 인터뷰를 병행함



제2장 서대문구 자치법규 현황



제2장 서대문구 자치법규 현황



1. 量에서 質중심으로

- 지방의회가 복원되고 자치입법이 제대로 행하여진 지 30년이 되어 감에 따라 축적된 자치입법의 분량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이전부터 존재하던 지역공동체로서 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집합체임
- 서대문구의 경우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서울특별시가 너무 비대하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여 자치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현재 조례 265건, 규칙 102건, 훈령 43건, 예규 4건 등 총 414건(2019.9.23.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방문)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가 복원되고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 자치입법권을 행사해 온지도 30년이 지나 양적으로 상당한 자치법규가 축적되었고 입법정책이나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현행 자치법규 중에는 초창기에 입법이 되어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시행에 큰 지장이 없어 그대로 두어 왔던 경우도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자치입법 전반의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좋은 품질의 법제를 마련할 경우 지방자치의 실질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벤치마킹 및 선의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보다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서대문구 자치법규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 체계의 현황 분석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 진행을 통하여, 量에서 質 중심으로 자치법규 개선의 중점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II. 현황

1. 개관

- 서대문구는 현재 조례 265건, 규칙 102건, 훈령 43건, 예규 4건 등 총 414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있음

조례	규칙	훈령	예규
265	102	43	4

[표 1] 서대문구 자치법규 제정 현황¹⁾

- 지방자치 복원 초에는 비교적 입법활동이 저조해서 종전에 지방의회의 기능을 상급지방자치단체 또는 구 내부부에서 행사하며 시행되던 조례 등을 그대로 유지했고 조례 제정 및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후에는 구 내부부와 대법원 등에서 자치입법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여 입법활동을 위축시켰음

-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자치입법권의 행사를 놓고 재의요구지시나 대법원 제도 등 중앙정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에 큰 갈등을 빚은 바가 없었으며,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재의요구나 대법원 제소의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자치입법권 행사 초기에 대법원이나 행정안전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치입법권에 제동을 걸었던 태도를 시정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재의 요구	53	36	50	27	42	27	23	21	20	22
대법 제소	22	6	9	8	9	10	1	2	3	1

[표 2] 최근 10년간 조례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추이

1) <http://www.law.go.kr/LSW/main.html>,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방문일 2019. 09. 23.

- 또한 대대적인 사무의 지방이양과 함께 법령에서 종전에 하위법령에 위임하던 사항을 자치법규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조례와 법령위임규칙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위임조례 외에 자치사무에 대한 특색 있는 조례의 제정도 늘어나게 되었음

- 서대문구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적기에 입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임한 사항이 없고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조를 맞추는 조례 제정도 적지 않아 전반적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여주고 있음

1) 상위법령의 제·개정·폐지 사항에 따른 자치법규 현황 분석

- 법령에서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이를 통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내용을 정하게 할 것을 기대한 것이나, 이러한 위임조례나 법령위임규칙²⁾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

-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제정한 규범으로서 주민의 권리 의무를 기속할 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으나, 주민은 동시에 국민의 지위를 겸하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따라야 할 의무도 지기 때문에 법령우위 원칙을 통하여 위계를 정하게 됨

- 자치입법 부작위의 성립요건을 따져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을 것, 이는 다시 i)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치법규의 구체적 내용 결정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나, 자치법규를 제정하지 않을 자유는 갖지 못함), ii) 법령의 시행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긴 경우가 아닐 것, iii)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자치법규의 제정이 법령의 집행에 필수불가결)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고, 둘째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이는 다시 i) 법령상 정해진 시행일 경과(입법자에게는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입법의 시기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입법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입법을 하

2) 규칙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전자는 조례위임규칙이라 하고 후자는 법령위임규칙이라고 구분할 수 있음

지 않는 경우 입법 재량 한계를 넘는 것), ii) 지방자치단체의 지체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음

-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체가 정당화되는 사유를 보면, 시행의 대상이 되는 상위법령이 위헌·위법인 경우, 시행의 대상이 되는 법령을 보완하는 다른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보완법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경우, 규율대상의 다양성으로 여러 종류의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하거나 자치법규 제정을 위하여 기존 여러 법령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위임입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이 현행 법질서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반면 자치입법 지체가 정당화되지 않는 사유를 보면, 예산상 제약, 법령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의 압력이나 이익단체의 반대를 들 수 있음

- 자치입법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 세 번째 요건은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제정은 하였으나 불완전·불충분한 경우는 부작위는 아니지만, 자치입법 사항이 여럿이고 상호 독립적임에도 일부를 빠뜨린 경우는 일부에 대한 입법부작위가 성립함

-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각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전수조사하여 서대문구 조례와 대비해야 하는데, 다행히 법제처에서 개설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임사항과 해당 자치법규를 연계시켜 놓았고 법제처에서 지연되는 사례를 별도 관리하고 있어 지연사례 추출에는 어려움이 없음

- 다만, 지연사유로서 내용을 쉽게 결정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정을 해결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위임조례에 담을 내용을 각 부처에서 통보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입수하여 비교해야 할 것이고 이미 입법조치를 마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자치법규도 참고하여야 할 것임

2) 상위법령 위반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난 자치법규의 실효성 분석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규범이며,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자치입법이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제정되는 사례를 유형화하면 대략 다음과 같음

○ 위임 근거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 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포함)에 따르면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서만 할 수 있고 헌법에서 인정한 대통령령 등에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기본권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반면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법률이 아니므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음

- 그러나 자치법규 중 조례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것이고 자신들을 선출해 준 주민들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령 등과 같은 행정입법의 범주에 넣는 것은 잘못이며,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면 안 되지만 국가의 법령이 아직 규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어떤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고 추후 국가법령이 제정되면 그 때 가서 법령우위 원칙을 따지면 될 문제임

-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주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설에 입각하여 이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다만, 국가의 법령이 공백인 경우로서 위임 근거가 없는 조례는 따로 구분하여 향후 판례변경을 기대할 필요는 있음³⁾

○ 위임범위를 일탈한 자치법규

- 조례나 규칙 가운데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 등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들은 위임한 사항을 분석하고 해당 조례나 규칙

3) 지난번 정부가 내어 놓은 개헌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법률유보원칙을 아예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대법원 등이 판례를 변경하면 해결될 문제임

이 그 위임범위를 지키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먼저 수권법령에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치법규에서 위임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위임범위 일탈로 볼 것임

- 수권법령에서 예시 방법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예시사항과 본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자치법규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본질적 동일성은 법률의 입법목적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게 됨

○ 수권법령에서 직접 범위 또는 예시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권법령의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자치법규의 내용이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수권법령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법령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모법령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반면, 자치법규의 내용이 법령의 목적 또는 취지를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함

3) 자치법규에 근거한 행정규칙(준칙 포함)의 적합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소관 자치사무의 주무관청으로서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으며,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역시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음

- 이들 행정관청은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형식의 문서로 발령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도 행정규칙을 제정할 지위에 놓여 있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하는 행정규칙 중에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거나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발령한 것도 있고 자치법규인 조례 등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된 것이거나 자치법규의 집행을 위하여 발령한 것도 있음

- 자치법규에 입각하여 제정된 행정규칙은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으나, 이러한 행정규칙도 근거가 되는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제정된 것인지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국가의 경우에는 법제처가 각 부처에서 발령하는 행정규칙을 사전 또는 사후에 심사하여 법규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지, 내용은 합리적인 것인지 등을 분석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및 제25조의2⁴⁾)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이러한 적법성 심사에 관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며, 현재 시행중인 자치행정규칙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여부 등을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적용대상 부재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자치법규 분석

- 명시적이 폐지나 특정 조문의 삭제가 있기 전에는 그 법규가 의도하는 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위반에 대한 제재가 주어지거나 준수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며 관련 공무원들을 통하여 이러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는 명시적 폐지 등이 없었음에도 더 이상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방치된 법규가 존재하며, 이처럼 외형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효력을 상실

4) 제25조(훈령·예규등의 사전 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또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3.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다른 훈령·예규등과 중복·상충되는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2(훈령·예규등의 사후 심사·검토) ① 법제처장은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등재된 훈령·예규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훈령·예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령·예규등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개별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정비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정비계획

3.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한 법규는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서도 법률생활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됨

- 법규 중에는 1회적 처분적 사항을 정한 것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당시의 입법목적
을 달성함으로써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들이 있으며, 각종 위원회를 남설하여
실제 개최실적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2. 구성체계

- 자치법규 현황을 크게 구의회, 감사, 주민자치, 기획재정, 복지문화, 환경도시, 안
전건설교통, 도시재생추진, 보건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으로 구성되며, 세부 제정 현황
은 다음과 같음⁵⁾

항목		총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구의회	소계	33	14	5	10	4
감 사	소계	14	5	5	3	-
주민자치	소계	89	51	23	15	-
	행정지원	41	16	13	12	-
	자치행정	27	21	4	2	-
	홍보	5	3	2	-	-
	민원여권	2	1	1	-	-
	전산정보	4	2	1	1	-
	교육지원	10	8	2	-	-
기획재정	소계	93	51	33	9	-
	기획예산	43	22	16	5	-
	일자리경제	20	14	4	2	-
	재무	11	4	6	1	-
	세무	15	8	6	1	-
	지적	4	3	1	-	-
복지문화	소계	76	63	12	1	-
	복지정책	10	9	1	-	-
	사회복지	13	11	2	-	-
	어르신복지	6	6	-	-	-
	여성가족	11	10	1	-	-
	아동청소년	12	11	1	-	-

5) <http://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상의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방문일 2019.09.23.

	문화체육	24	16	7	1	-
환경도시	소계	29	26	3	-	-
	도시재정비	1	1	-	-	-
	주택	3	3	-	-	-
	도시관리	3	3	-	-	-
	건축	1	1	-	-	-
	환경	8	8	-	-	-
	청소행정	13	10	3	-	-
안전건설 교통	소계	48	29	14	5	-
	건설관리	8	5	2	1	-
	토목	10	5	3	2	-
	안전치수	15	11	4	-	-
	푸른도시	2	1	1	-	-
	교통행정	9	5	2	2	-
	교통관리	4	2	2	-	-
도시재생 추진	소계	8	7	1	-	-
	도시재생	1	1	-	-	-
	사회적경제	7	6	1	-	-
보건소	소계	23	18	5	-	-
	보건위생	6	4	2	-	-
	지역건강	7	5	2	-	-
	의약	10	9	1	-	-
	보건지소	-	-	-	-	-
서대문자 연사박물관	소계	2	1	1	-	-
	자연사박물관	2	1	1	-	-
총계		265	102	43	4	-

○ 구의회 분야의 경우, 33건의 자치법규가 이에 해당되며,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구성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한 내용 및 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의회규칙(「지방자치법」 제43조)과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회의규칙(「지방자치법」 제71조)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음

- 제정이후 개정이 되지 않거나,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등을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예규)가 다수이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그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서대문구 회의 규칙에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안이 그 예시임

○ 감사 분야의 경우, 총 14건의 자치법규가 이에 해당되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위한 자치법규로 구성되어 있음

- 서대문구 계약심사 규칙,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 관련 조례,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서대문구 전반의 감사체계 구성을 위한 내용임

-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훈령보다 조례로 규정하는 안이 법령 체계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 체계 점검이 필요함

○ 주민자치 분야의 경우, 89건의 자치법규가 이에 해당되며, 각종 행정지원, 자치행정, 홍보, 교육, 전산정보, 민원과 관련한 내용이 이에 해당됨

- 행정지원의 경우, 훈령이 총 12건으로 가장 높으나, 과거에 제정된 이후로 개정을 거치지 않거나, 규정 목적이 현재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훈령의 개정·폐지 작업이 필요함

- 자치행정의 경우,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및 자치사무와 관련한 내용의 자치법규 구성이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분권의 흐름을 반영하여 주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참여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지역 조성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전산정보와 같은 경우, 기본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자정부의 방향에 맞추어 **페이퍼리스(Paperless)** 정책을 도입시킴으로써, 행정 서비스 개혁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임

- 이외에 교육과 관련하여 주로 자치사무로서 서대문만의 특색을 반영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분야로 보임

○ 기획재정 분야의 경우, 가장 많은 수의 자치법규(414건 중 93건)가 이에 해당되며, 기획예산, 일자리경제, 재무, 세무, 지적과 관련한 내용 등이 그것임

- 일자리경제 분야는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여 시범적인 정책 및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일 것임. 예컨대 창업지원센터, 근로자복지센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위원회 등과 같은 자치법규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며, 서대문구의 지역자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과 연계한 자치법규 운영은 質 중심의 자치법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세무와 관련하여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경우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 검토. 그 예로, 구세 기본조례, 구세 조례, 구세 징수조례, 구세 감면 조례 통합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임

- 재무 및 지적과 관련해서는 주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및 규칙이 대다수였음

○ 복지문화 분야의 경우, 서대문구의 자치법규에서 기획재정분야 다음으로 많은 수의 자치법규(414건 중 76건)의 수를 차지하였으며, 크게 복지정책, 사회복지 일반, 어르신복지,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문화·체육에 관하여 구성체계를 이룸

- 사회복지 정책 및 일반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됨. 서대문구는 [일·생활·복지]의 3합을 이루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선도적 모범모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지역복지 내지 커뮤니티 케어의 진화형 융복합 모델)

- 세부영역으로, 어르신복지, 여성가족, 아동·청소년이 있으며, 여러 고려 사항이 있으나, 특히 대상유형과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과 자치법규 제정이 매우 중요한 영역임

- 문화·체육에 관하여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을 파악하여, 현재의 서대문구 현황에 맞게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음

○ 환경도시 분야의 경우, 총26건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도시재정비, 주택, 도시관리, 건축, 환경, 청소행정 분야가 이에 해당됨

- 주택 분야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이에 해당되며, 각각의 목적과 규정하고자 하는 방향이 유사한 조례이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도시재정비 및 도시관리, 환경, 건축 분야의 경우 서대문의 특색을 위한 정책과 유·무형적 자원 연계가 필요한 분야이며, 청소행정분야의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자치법규의 비율이 높았으며, 과태료 관련 재량규정의 경우, 지역의 상하한의 범위를 현황에 맞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안전건설교통 분야의 경우, 48건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관리, 토목, 안전치수, 푸른도시, 교통행정, 교통관리의 분야로 구성됨

- 상위법령에 위임에 의하여 또는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된 자치법규의 비중이 높았으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거나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한 자치법규도 내용도 있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제명을 가진 자치법규가 다수임

- 이러한 경우, 상위법령의 재·개정·폐지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반영된 조례·규칙, 적용대상 부재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례 등의 문제유형이 발굴되므로 조례 제정 및 운영에 주의가 요구됨

- 일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보다는 세밀한 현황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하여 고퀄리티 자치법규 제정이 가능한 영역이므로 이와 관련한 개선이 긴요함

- 그 예로 서대문구 개별 지형에 따른 결빙 리스크 등 자연재해 빈발우려지역의 예방적 지원 및 필요조치 의무부과와 실효성확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들 수 있을 것임

○ 보건소와 관련하여 총23건으로, 보건위생, 지역건강, 의약 분야로 구성되어 서대문구 전반의 보건 분야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그밖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도시재생 분야 및 자연사박물관 분야, 기타 내용 등에서 10건 정도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3. 기타 - 위원회

-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을 의미하며, 서대문의 경우, 위원회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약 150여개 이상의 위원회⁶⁾가 확인되고, 위원회의 명칭에는 협의회,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회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⁷⁾

- 자치법규 전반의 분석 흐름과정에서, 다수의 위원회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추가적인 쟁점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음. 관련하여 해당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법적 성격, 상위법령과의 관계, 소관사무, 행정작용 및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설치근거에 따른 분류

6) 2019년 09월 16일 자치법규 현황 기준.

7) 교육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 위원회를 근거에 따라 분류해보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근거없이 규정된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음. 먼저, 법령에 근거하는 위원회의 경우, 크게 상위법령에서 “... 위원회를 둔다“, “...설치·운영한다.”등⁸⁾의 규정형식을 취하는 유형과 “...둘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등⁹⁾의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조례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재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법령에서 위임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두도록 함. 후자의 경우, 지역에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것¹⁰⁾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경우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근거법령을 명시하여야 함

-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크게 상위법령에서 “...둘 수 있다”는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유형과 조례에 의하여 창설되는 유형¹¹⁾으로 나눌 수 있음. 전자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유형으로 볼

8)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등

9)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등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상위법령과 관계를 볼 때,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제1항에서 “...둘 수 있다”는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역에서 위원회를 두기로 판단한 경우, 조례에서 “둔다”라는 형식을 취하는 안이 바람직하다.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수 있으며,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근거법령을 명시해야 하는 안이 바람직함. 후자의 경우,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는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유형¹²⁾과 규칙에 의하여 창설되는 유형¹³⁾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성격과 사무의 성격, 규정형식과 방식 및 구체적인 내용이 적합한지 등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관련하여 조례로 정함이 법령체계 및 내용상 바람직함

- 근거 없이 규정된 위원회¹⁴⁾의 경우, 상위법령의 제·개정·폐지 과정에서 정비되지 않은 유형이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타 자치법규와의 내용 연계 등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음

○ 소관사무에 따른 분류

-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¹⁵⁾에서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요건을 규정

한다)를 설치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공공급식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급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등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5조(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 ①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

15)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¹⁶⁾에서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소관 사무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조례로 설치할 수 없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¹⁷⁾

○ 형식적 내용에 따른 분류

- 위원회의 설치근거,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관련 내용 및 규정방식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상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근거한 상위법령이 타당한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잘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음

- 서대문구의 경우, 위원회의 설치 및 법적 근거·소속·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 중 상위법령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유형이 발견되었으므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16)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 192면.

-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규정방식 또한 점검이 필요한 부분임.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근거, 기능, 목적 등을 먼저 규정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및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규정, 전문위원 규정, 수당규정, 운영세칙 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방식의 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실질적 내용에 따른 분류

- 서대문구의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만 규정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를 둔 경우, 센터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이러한 위원회 중 위원이 중복 구성되거나, 사실상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기능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등의 경우가 있는지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위원회의 본래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법령에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관계 법령과의 관계를 통하여 통합·운영의 근거를 찾거나, 필요한 경우 상위법령의 개정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 등의 경우, 구성, 운영 및 기능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령 및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기능 및 법적 근거, 사무유형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관련 안을 자유롭게 정해볼 수도 있을 것임. 나아가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개방형 인력 pool 개념의 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음

- 이외에도 서대문구 위원회 설치 운영상의 문제 및 한계를 분석하여 위원회 기능 활성화 및 제고를 위한 종합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임

- 서대문구의 경우 위원회의 설치근거에 따라 살펴보면, 상위법령과의 관계에서 입법형식상의 오류,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의 유형,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유형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므로 상위법령과 위원회의 관계를 고려한 규정형식의 개선이 요구되며, 사무유형에 따른 위원회의 분류 및 법적합성·효율성 분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위원회의 형식적 내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법적 근거·소속·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의 분석을 통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또한 규정방식과 관련하여서 일반적인 위원회의 내용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법적 근거·소속·기능을 규정, 세부적으로는 위원의 수·자격·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간사 또는 기구, 공청회 등의 개최 규정, 수당규정, 운영세칙 규정 등을 두므로 이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구성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체계를 점검해야 할 것임

- 위원회의 실질적 내용과 관련하여, 설치·운영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 및 노력이 필요하므로, 실제 운영과 성과가 그에 상응하는지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의 현황을 종합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통합운영·회의식 운영·인력풀 활용 등 효율적인 운영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조례 등의 입법 및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중요한 점은 기존의 하드웨어적 조직구성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적 기능 중심을 바탕으로 수직적 칸막이 방식에서 수평적 분업 협업체계를 고려한 참여민주주의 내지 협치통로의 확보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O2O 방식 및 데이터 관리에 의한 지식기반 위원회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며, 위원회 운영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지식관리 또한 긴요함

Ⅲ.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

1. 행정서비스 유형

- 서대문구 행정서비스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자치법규는 교육, 문화, 방법, 보훈, 복지, 사회경제, 식품위생, 안전, 재난, 체육, 환경 등(가나다순)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자치법규 체계를 주민의 관점에서 작용법적으로 재구성할 경우 어느 분야에서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고,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체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업무를 찾아서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대신 통합창구를 통한 해결 등 실질적 법제 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특정 부서의 업무 집중도와 주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 등의 관련성도 확인할 수 있음

- ‘행정내부 유형’에는 조직, 공무원, 의회, 재정, 조세, 기금, 예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법규, ‘행정서비스 유형’에는 관광, 교육, 문화, 방법, 보훈, 복지, 사회경제, 식품위생, 안전, 재난, 체육, 환경 등에 관한 자치법규, ‘인적·생애주기 유형’에는 건강, 노동, 노인, 다문화, 아동, 여성, 장애인, 저소득, 주민참여, 청년, 청소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법규, ‘물적 유형’에는 건축, 공공시설, 공동주택, 도로, 도시, 동물, 주차장, 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법규,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자치법규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분류에 중첩적으로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하향식 탐다운 분류보다는 항목 체계화를 통하여 자치법규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의 속성값을 구조화 데이터로 축적하여 검색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1) 교육 분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그 내용을 다른 자치구와 비교할 때 최근에 개정하였고, ‘제14조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제15조 보고, 검사 및 평가’ 조항을 도입함

- 조례 제14조는 ‘사정의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5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교육경비 보조금이 애초에 예상했던 조건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보고, 검사, 평가를 도입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내실화, 환경대응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음

- 타 자치구에 마련된 교육관련 조례로는¹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노원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유일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이 있음

18) (2019.06.09.기준)

24개 자치구 대상	(가나다순서)	조례 수(개)		평균	270
1	강남구	239	13	마포구	285
2	강동구	286	14	서초구	274
3	강북구	281	15	성동구	253
4	강서구	257	16	성북구	278
5	관악구	252	17	송파구	246
6	광진구	244	19	영등포구	297
7	구로구	287	18	양천구	310
8	금천구	265	20	용산구	255
9	노원구	329	21	은평구	234
10	도봉구	288	22	종로구	237
11	동대문구	306	23	중구	282
12	동작구	270	24	중랑구	237

- 그중에서 특히 ‘교육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는 주목할 만함. 노원구에 특화된 조례로서,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증시하고 구민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배려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을 설립·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음. 교육은 그 자체로서 ‘인간다운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복지와 연동될 수 있음. 특히 학교가 많고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대문구에는 이러한 교육복지의 측면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교육복지재단,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자기주도학습센터’에 대한 조례도 특화된 것임. 서울 강동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에 도입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및 진주시에서도 제정되어 있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강동구의 경우 ‘사이버공부방’ 인터넷 사이트를 마련하고, 초등, 중등대상 사이버스쿨을 마련하여 교육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음. 서대문구의 경우 여러 대학과 초중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어 교육특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육프로그램과 인적자원을 보다 활용하여 오프라인/온라인상 소통, 교류하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관광교통 분야

- 서대문구는 ‘관광’ 분야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서대문구의 여러 대학교, 문화시설, 박물관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서대문구 내의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경제의 선순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서대문구의 ‘교통’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음

- 최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는 최

근 운전부주의 및 운전미숙으로 인한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에서 고령운전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관련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타 자치구에 마련된 관광 관련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들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6조는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강남구와 강서구는 의료관광분야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의료관광전문인력 운영 등',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3) 문화체육 분야

- 서대문구 '문화체육'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문화체육회관, 서대문문화원 등 문화시

설을 설치, 운영하여 문화에 대한 기초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음은 긍정적임. 그에 더하여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타 자치구의 ‘문화’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등이 있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그 규정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

-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등은 특화정책을 담은 조례로서, 문화인프라를 확장하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문화시설 셔틀버스’에 대한 조례도 교통과 문화, 이동복지 측면에서 ‘주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등 활동증진과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 증진, 고령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서대문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두는 방안 검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참조

4) 방법, 식품위생, 안전, 재난 분야

- 서대문구 ‘방범’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 이들 조례는 서울특별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이고,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정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필수조례임

- ‘식품위생’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3곳에서 제정되어 있음

- 서대문구 ‘안전’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있음. 구민안전보험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12개 자치구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함

- 서대문구 ‘재난’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음. 이들 대부분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제정되어 있음

- 타 자치구의 ‘식품위생’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위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음. 식품위생분야의 조례 수가 적은 것은 식품위생법령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영업장 복층붕괴사건과 관련하여 문제

가 되므로, 폐지 내지 안전조항 추가 등 개정 필요 검토

- 타 자치구의 ‘안전’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있음

- 서대문구에는 석면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 서울특별시 총 25개 자치구 중에서 9곳에서 석면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8조에서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규정을 두어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사전 대비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타 자치구에서 발견하기 어려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10조에서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및 처리 등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다른 자치구에서는 석면관련 검사, 측정, 관리에 대한 규정에 국한되어 있는데 노원구, 영등포구, 중구에서는 석면안전관련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타 자치구의 ‘재난’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음. 서대문구에서도 미래세대의 안전에 대한 강화를 위해 내진, 화재 대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조례 검토 필요함

5) 사회경제, 정보통신, 환경 분야

- 서대문구 ‘사회경제’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음

- 서대문구 ‘정보통신’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가 있음. 정보화 기본 조례는 필수조례로 타 자치구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함. 그런데 서대문구의 교육적 학구적인, 젊은세대와 소통하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IT 기술의 Pilot 프로젝트 도입 지원 등 선제적 모델 제시도 가능할 것임

- 서대문구 ‘환경’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있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서초구와 서

대문구에서 제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29개 지자체에서 도입된 드문 조례임.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입 지원 및 충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타 자치구의 ‘사회경제’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 유사내용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 검토

- 타 자치구의 ‘정보통신’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음

-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마을미디어’로 정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마련하고 교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서대문구에서도 영상매체를 활용한 주민과의 소통, CCTV에 대한 관제센터 고려 필요

- 타 자치구의 ‘환경’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

료 사용에 관한 조례(강동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이 있음

- 특히 노원구의 경우 환경에 대한 특수조례들이 많았으며, 1회용품 제한, 중랑천 환경센터, 노원환경재단 등을 들 수 있음. 거주지역으로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녹지보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함. 그리고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관련하여 어린 이집 급식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복지 분야

- 서대문구 ‘복지’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 특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 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조례로 보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연령을 한정시키지 않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연령을 노인층에 한정시키고 있어 청장년층의 보호에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 타 자치구의 ‘복지’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음

-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는 노인복지 및 복지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내용으로 서대문구에서도 고려해볼직 함

-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조례’는 보통 출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지원정책을 육아과정

으로 확장시키는 것으로 도입 검토. ‘아기사랑나눔센터’에 대한 조례는 아이들이 월령에 따라 다양한 물품을 사용하고 이를 자원절약차원에서 공유하는 문화 조성에도 기여함. 그리고 ‘장학기금’이나 ‘장학재단’을 두는 자치구가 많으며, 이는 서대문구에서도 교육과 복지는 연관되며 ‘장학’에 대한 조례제정은 복지의 측면에서도 필요

2. 인적 분야

- 생애주기적 인적 분야에는 건강, 노동, 노인, 다문화, 아동, 여성, 장애인, 주민참여, 청소년 등(가나다순)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있음

1) 건강

- 서대문구 ‘건강’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가 있음

-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에 관한 조례는 서울 10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운동 추진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자에 대한 예우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타 자치구의 ‘건강’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음

- 특히, 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 및 지원,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 소아당뇨 인식개선, 신생아 건강을 위한, 미혼부모를 위한 지원 등 질병의 구체적인 분야별 대상별 지원, 한방과 관련한 건강지원 조례 등은 서대문구에서도 참조할 필요

- ‘금연지도원’ 조례는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2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관악구 등 타 자치구의 경우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 금연지도원 관련 규정을 같이 두는 경우가 많음. 서대문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로 관련 자치법규를 분산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

2) 노동

- 서대문구 ‘노동’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있음.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타 자치구의 ‘노동’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음

- 서대문구에서는 노동과 관련하여 근로자복지센터를 마련하고 있으나, 고용상의 차별금지, 일자리관련, 권익보호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특히 양천구에 제정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타 지자체에 없는 것으로 검토 필요함

3) 노인

- 서대문구 ‘노인’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

- 타 자치구의 ‘노인’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사업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음

-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10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음. 특히 서대문구는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두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대문구의 경우 '보행기 지원', '노인학대예방', '치매지원' 등에 대해 조례를 마련하고 있음.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가시설, 건강주치의사업, 상담 센터 등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고려 필요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는 '노인자살 예방'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자살 시도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자치구에서 '노인복지증진'이라고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4) 다문화

- 서대문구 '다문화'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있음.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른 자치구의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외국인주민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규정하는 곳도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책의 유사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아동

- 서대문구 '아동'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가 있음

- 서대문구는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조례, 놀이시설 안전관리,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도 별도의 조례를 두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8조에서 시설물 관리주체(부서)를 정해주고 그에 대하여 제7조에서 지도, 감독 및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데, 구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안전관리총괄부서의 종합계획 수립, 담당부서 지정의 세분화가 되어 있음

- 타 자치구의 ‘아동’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

- 서대문구에 아동 관련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친화도시조성 위원회’가 있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관련 정책의 심의, 지원으로 「아동복지법」제12조에 근거한 필수사항임. ‘아동위원협의회’는 명예직으로 구성됨. ‘아동친화도시조성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사항은 아님. 서대문구는 교육친화적 환경을 아동분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아동교육 특화시설을 통해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고부가가치창출에 대한 공익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노원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됨. 동작구의 육아나눔, 용산구의 어린이 영어도서관등 미래세대에 대한 정책조례 등도 참조

6) 여성

- 서대문구 ‘여성’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있음. 여성센터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직업훈련,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하여 잠재능력을 개발, 증대시켜 자아실현 욕구를 선도하고 취업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다고 하고 있음

- 타 자치구의 ‘여성’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음

- 서대문구의 경우 여성센터의 설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2개의 조례가 있으나, 경력단절여성, 여성친화도시 내지 출산친화도시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서대문구의 경우 여성센터 조례에서 직업훈련,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나, 서울특별시 14개 지자체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 관련 지원 조례에서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한다고 규정하며, ‘여성 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등을 규정하고 있음

7) 장애인

- 서대문구 ‘장애인’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필수조례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에 제정되어 있음.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는 서울노원구와 서대문구에만 제정되어 있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타 자치구의 ‘장애인’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15개 자치구의 장애인 월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 10여개 자치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대문구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7개 자치구의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동작구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의 장애인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초구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가 있음

- 장애인 관련 조례는 기타 자치구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월체어 수리 지원’, ‘교복구입 지원’ 등 경제적 측면과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등 교육, 문화 측면 고려

8) 저소득

- 서대문구 ‘저소득’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음.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위로 등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보훈 관련 법

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등을 그 대상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 안정 및 위로를 위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저소득층의 유형은 인적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자치구에 따라서는 이러한 유형을 반영한 개별 조례를 두기도 함

9) 주민

- 서대문구 ‘주민’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가 있음. 주민과 관련한 여러 조례가 제정된 것은 주민의 시민의식 향상 및 참여증대를 위해 바람직하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연관되는 규정이 많으므로 하나의 조례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환경 등 제 분야의 정책과 행재정 입법 등을 포괄하는 종합체계적인 주민참여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고려

- 타 자치구의 ‘주민’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은평구의 주민참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區民廳)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천구의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

-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양천구 구정 전반에 대한 대화와 소통, 의견제시와 그 반응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거

버너스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규정함.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는 감사청구, 주민투표 등에 대한 조례를 포함해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수를 줄이면서 내실화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함

10) 청소년, 청년

- 서대문구 ‘청소년’, ‘청년’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있음

청년 기본 조례의 경우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들이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 주거, 부채경감, 생활안정, 권리보호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등이 있음

-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창업 지원’, ‘취업 지원’ 등 청년세대의 경제적활동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종합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방법도 참조. 특히 서대문구는 대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다수 분포하므로 청소년복지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 참여도 고려

3. 물적 분야

1) 건설건축, 토지, 주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처럼 공동주택관리, 지원, 분쟁조정을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는 서대문구만의 특성을 살린 조례로 볼 수 있음

- 타 자치구의 ‘건축건설’, ‘주택’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임대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공동주택층간소음예방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공동주택층간소음예방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

- 층간소음예방, 공사소음방지, 에너지제로주택사업 등 주택의 내구연한을 늘리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 검토

2) 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 서대문구 ‘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음

- 타 자치구의 ‘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천 에너지마루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음

-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조례, 휴양소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지원, 어르신과 임산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시설 설치 조례는 서대문구에서도 참조할만 하며, 임산부의 경우 넓은 주차공간이 필요하므로 장애구역과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되 필요시 관련 상위법령 개정도 추진

3) 도시, 동물

- 서대문구 ‘도시’, ‘동물’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

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음

- 타 자치구의 ‘도시’, ‘동물’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만들기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의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음

- 도시녹화,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는 서대문구에서도 참조할 만함. 도시지역에서 동물은 가축으로서 관리대상이라기보다는 반려동물로서 관리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시대적 현상을 반영하여 조례로 규율할 필요. 서대문구에는 가축 제한에 관련된 조례만 있으나,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 보호, 반려동물 관련 법제화도 고려

4. 행정내부 분야

1) 공무원

- 서대문구 ‘공무원’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음

- 타 자치구의 ‘공무원’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서대문구에서도 부패방지의 실질화, 투명행정, 민주행정, 민주적 조직운용 등을 위해 제정 검토

2) 재정

- 서대문구 ‘기금’, ‘재정’, ‘조세’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음

- 타 자치구의 ‘기금 재정’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의 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용산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음

- 강남구 강동구의 경우처럼 기금관련 통합관리 규정을 두는 것이 기금관리에 더 효

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으므로 서대문구도 참조할 필요. 동대문구의 경우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분야별로 조례를 두고 시행하고 있음. 강북구와 송파구는 예산집행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을 세울 때 뿐만 아니라 집행시에도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의회

- 서대문구 ‘의회’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인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있음

- 타 자치구의 ‘의회’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명예기자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 등이 있음

-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조례, 의원교육연수에 대한 조례,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은 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주민대응성 강화를 위해서 중요하며, 강동구의 경우 의회 기본조례를 두어 의회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회관련 규정을 전체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음

4) 조직 구성

- 서대문구 ‘조직’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 타 자치구의 ‘조직’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채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

- 민원조정위원회,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통일적 조문체계에 의하여 조례제정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150여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및 구성과 운영의 기본공통과 개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서울 자치구들에서 다수 발견되며, 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 세계관 형성 및 교육 등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동력개발과 관련하여 교육과 관련되는 미래청사진 형성 등 비전을 제시하고 촉진 지원하는 역할로서 특히 서대문구 의회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여 조례로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

5. 기타

- 서대문구 ‘특수정책’ 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음. 다른 자치구의 경우 ‘보행권’에 대한 조례는 있으나 서대문구는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라는 고유한 조례를 보유하고 있음

- 타 자치구의 ‘특수정책’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모범도시 광진21실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도봉구거리예술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도봉구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는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환경 조성 도시’ 등을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다소 부족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활용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시도는 서대문구에서도 참조할 만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 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한 지역'으로 교통특구를 지정하여, '1.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3.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한 사업, 4. 대중교통 활성화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대문구의 경우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편에 속하므로, 이를 참조할 만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이용자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서대문구에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이 다수 상주하는 지역들이 있으므로,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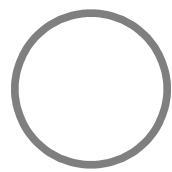
- 그 외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의날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위치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 타 자치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계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

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조

IV. 소결

- 서대문구의 자치법규 현황 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법규 전반의 규범적 정합성·유기적 체계성, 자치법규의 내용과 형식, 규정 수준의 제고 등 내용적 품질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다양한 행정환경과 경제적, 문화적 고유성을 가진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전체적인 비교, 유사 지자체와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한 진단을 통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법규 제·개정등의 시사점 도출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개선을 도모하였음
- 주민생활에 가장 근접한 최일선의 규범인 자치법규 품질을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생활규범이 되도록 서대문구의 자치입법 활동의 지속적인 진화와 발전을 기대함
- 법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수록 규범력도 제고되며, 그 핵심은 구성원의 주체적 참여이므로, 서대문구가 참여입법 생활입법 정책입법 지식입법의 선도 역할을 하기를 기대함



제3장 서대문구 자치법규 개선

제3장 서대문구 자치법규 개선



1. 기본방향

- 규제개선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서 상위법령에의 위반 등 문제점을 도출할 뿐만 아니라, 발굴된 사례에 대해 내용적인 측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여, 자치법규의 핵심인 조례가 지역공동체의 자율규율로서 국가 전체법질서 내에서의 규범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함

- 국가의 경제활성화 및 국민의 권익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개선노력이 신속하게 일선 지방행정의 수준까지 확산되어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및 제도개선 활동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1. 전수조사 및 문제유형별 개선방안 제시

- 서대문구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문제유형별로 각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 문제되는 조항별로 별도의 표를 작성하였는데, 표에서는 법규 제명 및 조항, 조항의 내용, 상위법령 및 문제유형을 기재하고, 문제점 및 검토의견을 적시하였으며, 개선방안과 개정조문안을 제시함

2. 서대문구의 미래지향 고려

○ 분석결과 종합 및 문제된 자치법규의 유형별 도표화, 개선방향 제시

- 위의 각 분야 분석을 종합하여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유형별로 도표화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 유형은 앞에서 본 위임조례, 자치조례의 구분과 법령위임규칙, 조례위임규칙, 조례집행규칙 및 기관위임규칙으로 나누어 도표화하였으며, 개선방안은 자치법규 정비의 대강을 제시하고 각 자치법규별로 정비사유 및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추후 지방의회의 입법절차 수행에 대비함

○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자치입법의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 및 조례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제시

- 현재 자치입법에 대한 입안기준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여 보급 중에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입안기준은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데는 크게 미흡함

- 특히 법령에서 잘못 규정하여 자치법규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한 대처가 없고, 법률유보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치입법의 범위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입안기준을 제시하는데 연구 중점이 여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을 감안하여 중요사항부터 제시하도록 함

- 자치구의 경우 설치 당시에는 자치권에 제한을 둔 형태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대도시 행정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자치구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러한 제한을 철폐하는 문제도 제기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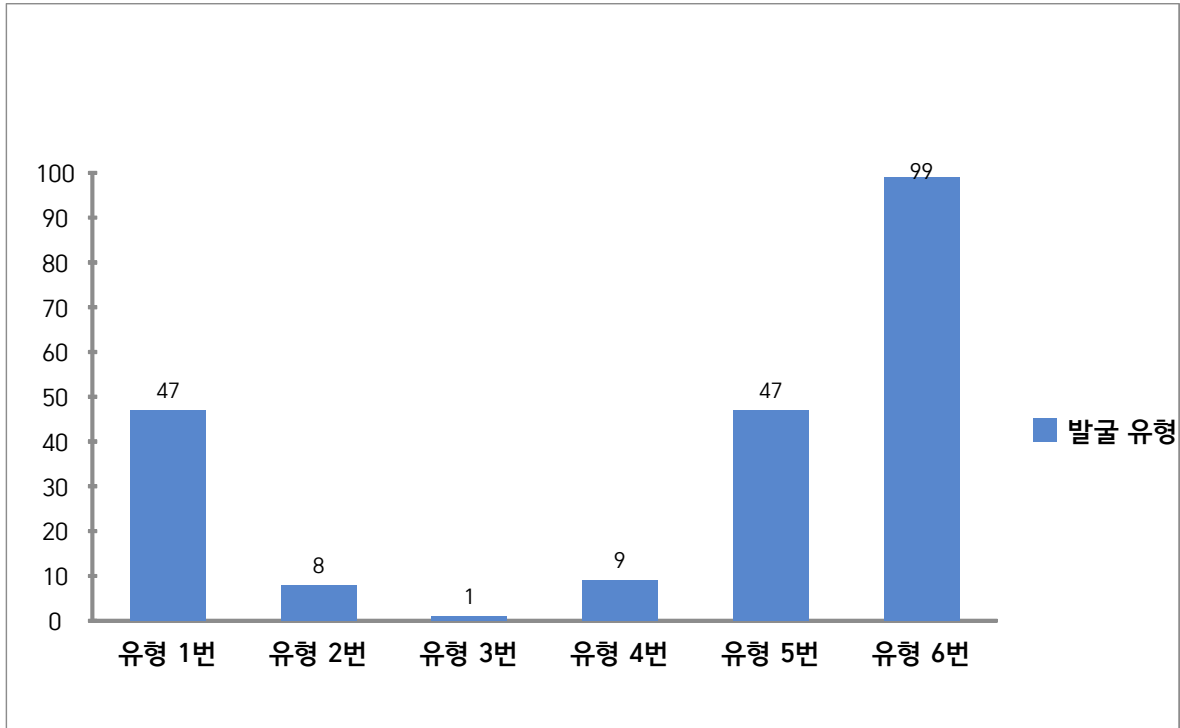
○ 자치입법의 체계적합성과 실효성 제고 및 효율성 달성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

-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안을 토대로 향후 자치법규 정비 지원 시 직접적·실질적인 자료로 활용

-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촉진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정책의 주체로서 입법 기능을 활성화해가는 중요한 계기 마련

II. 주요 개선사항

○ 자치법규 전수(全數) 대상 문제유형별 원인 및 개선책 제시



- 서대문구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414개의 자치법규에서 211건이 발굴되었고, 세부유형별 발굴 건수는 다음과 같음 (다만, 발굴 유형은 상대적일 수 있음)
- 유형별 발굴 건수는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47건), ② 상위법령 및 조례 위반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8건), ③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건), ④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훈령·예규로 규정 또는 규칙·훈령·예규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9건), ⑤자치법규 입안기준 불합치(47건), ⑥기타(99건)으로 총 211건이 발굴되었음
- 각 유형별 비율은 ①유형 22.27%, ②유형 3.79%, ③유형 0.47%, ④유형 4.27%, ⑤유형 22.27%, ⑥유형 46.92%로 나타났으며, 주요 개선사항의 ①-③유형은 약 26.54%의 분포를 보였음
- 유형별 분류 기준은 ① — ⑥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및 조례 위반(위임범위 이탈, 불일치 포함) 소지, ③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④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훈령·예규로 규정 또는 규칙·훈령·예규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 ④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훈령·예규로 규정 또는 규칙·훈령·예규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 ⑤자치법규 입안기준 불합치, ⑥기타 유형

■ 유형별 대안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유형

- 특별한 노력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또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하며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결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므로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볼 수 있음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이탈, 불일치 등 포함) 유형

- 상위법령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혹은 대상의 범위를 초과한 예 등이 주로 발굴되었음. 조례 제·개정단계에서 전문가 참여 등 입법활동 지원의 개선이 있어야 자치입법 절차에서 발생하는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③ 법령상 (위임)근거 없는 규제 유형

- 규제등록제도의 활용으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치법규 제·개정 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④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훈령·예규 또는 그 외의 경우

-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단체장이 규칙으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함, 주민의 재산권 등 주요 기본권에 대한 사항은 조례의 형식이 보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⑤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배되는 유형

- 주로 형식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다수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담당자에 대한 법제교육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

⑥ 기타 유형

- 주로 조문 인용, 부처 인용, 맞춤법, 제명 형식상의 오류, 존속기한 만료 규정 등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가능

Ⅲ. 개별적 검토

A. 의회운영위원회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규율내용을 위임한 경우 그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조·항·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381p)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은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결산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제84조에서 결산 검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 ----- -----.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데이터
- 〈정책 제언〉 예결산 항목 데이터 웹서식 활용 온라인 검색시스템 구축 제공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인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규율내용을 위임한 경우 그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조·항·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381p)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문에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 상위법령을 명시하도록 수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u> (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 제40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u> (이하 “의회”라 한다) 및 그 <u>소속 행정기관</u> -----.

2) 제명 - 띄어쓰기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공인 사용 데이터
- 〈정책 제언〉 Paperless Administration 으로의 전환 고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1)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u>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u> 」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u> 」 ----- ----- ----- ----- ----- ----- -----.

2) 참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위임전결 유형 및 현황
- 〈정책 제언〉 온라인 행정시스템을 통한 재구조화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1) 제2조

제2조(비용)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1) 개선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 의하면,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용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맞게 재정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비용) ①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u>현지교통비</u> ,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제2조(비용) ①----- ----- <u>일비, 숙박비, 식비</u> ----- -----.

2) 제4조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 별표2의3호를 준용한다.

(1) 개선사항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나, 여비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인용함이 바람직. 또한 일반적으로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때는 "준용한다"라는 표현을, 특정조문을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대상에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적용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391, 법제처, 2018)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u>국내여비 규정 별표2의3</u> 호를 준용한다.	제4조(실비의 지급기준) -----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 따른다.

3) 제명 - 띄어쓰기

4) 참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 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은 50,000)	20,000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의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 데이터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종합상황실운영규정

1) 제4조

제4조(상황보고 대상) 상황실에 보고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염병 및 무허가 건물의 발생

(1) 개선사항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감염병으로 명칭이 변경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상황보고 대상) 상황실에 보고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상황보고 대상) ----- -----.
4. 전염병 및 무허가 건물의 발생	4. <u>감염병</u> -----

2) 제명 - 띄어쓰기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종합상황실 운영 데이터
- 〈정책 제언〉 O2O XML 데이터 관리에 의한 지식기반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B. 행정복지위원회

a. 감사담당관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1) 전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해당 내용을 규칙 또는 조례로 개정함이 바람직

2) 참고

가평군 고창군 과천시 광명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공익신고 데이터
- 〈정책 제언〉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축하고 있는 부패방지허브시스템과 연계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제10조전단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개선사항

상위 법령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는 "준용한다" 라는 표현을, 특정조문을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대상에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적용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자치법규 입안매뉴얼 p307~308, 법제처, 2013)하고 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u>준용한다</u> .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 ----- ----- <u>따른다</u> .

추가적 검토

- 서대문구의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없으며, 가평군의 경우 시행규칙 있으나 4개 조문이고 내용상으로도 인사권 침해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조례에 합쳐도 될 것으로 보임
- <입법 과제> 서대문구 조례 중 간사와 서기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례 제7조처럼 서기보다 사무직원 표현이 나을 것임

b. 교육지원과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1) 제6조제2항

제6조(보조금 의 교부결정)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교부결정 통지의무만을 정하고 있을 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행정청은 처분시 행정목적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그것은 법정부관이고 강학상 부관이 아님. 위와 같은 제6조단서가 없더라도 필요한 부관부 교부결정이 가능하다고 볼 것임

2) 참고

대다수의 기초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도 있으며, 계룡시의 경우 교육발전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고창군의 경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명칭으로 함

김포시 당진시 보령시 부천시 소사시 등의 경우 시행규칙을 두고 있음

서대문 조례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가평군의 경우 기숙형 공립고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가평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을 규정함. 강남구의 경우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 강동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

우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기함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 실무적 검토 필요함

- 서울특별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 서대문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유치원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12, 2016. 3. 30., 2017. 9.27.)

-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해당연도 일반회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시비(구비 포함)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12, 2016. 3. 30.)

- 관악구 7% 강서구 5% 강북구는 % 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단서는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추가적 검토

- 자치법규 대부분의 정비사항은 상위법 미반영이고 법률위임 없이 제정하는 등의 내용적 위법사항은 많지 않는 듯함. 문제는 조례에 별 내용이 담길 수 없다는 점이며, 조례제정 범위확대를 위한 개별법 개선노력이 중요함
- 〈현황〉 서대문구 교육보조금 현황 데이터
- 〈입법 과제〉 신청시 교육장을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 고려
- 〈정책 제언〉 각급학교별 데이터관리에 따른 유형화 및 보조금 차등화 정책 고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1) 제5조 등

제5조(평정기준 및 입사생 결정) ① 선발에 필요한 입사생의 평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평정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제1순위 : 저학년인 학생
2. 제2순위 :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직전 학기 대학성적)
3. 제3순위 : 연령이 낮은 학생

② 입사생은 제1항의 평정기준을 참고하여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6조(서대문구민 특례) ① 입사생 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한 저소득층, 자원봉사자 및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대학생에 대하여 입사정원의 10% 이내로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평정기준 및 입사생 결정은 제5조에 따른다. 다만, 평정항목 중 대학소재지는 평정기준에서 제외한다.

제10조(입사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설에 입사할 수 없다.

1. 전염성 질환 보균자
2. 대학에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3. 다른 기숙시설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제11조(입사기간) 입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퇴사) 입사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입사생을 퇴사시킬 수 있다.

1. 소속 대학으로부터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은 때
2.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때
3. 병역의무 통지를 받아 이행하게 될 때
4. 생활수칙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
5.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지 않았을 때
6. 그 밖의 퇴사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1) 개선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에서는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포괄적 위임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 규칙에서는 입사생 결정기준, 구민에 대한 우대, 입사금지사유, 입사기간, 강제퇴사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포괄위임금지는 자치법규 상호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위 조례 제17조만을 근거로 하여 기숙시설 입사의 핵심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낮추고 집행부 우위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위에 열거한 사항은 적어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위임이 불가피하더라도 중요사항은 조례에 정하고 예측하기 어렵거나 세부적인 사항만 규칙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평정기준 및 입사생 결정) ① 선발에 필요한 입사생의 평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평정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제1순위 : 저학년인 학생 2. 제2순위 :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직전 학기 대학성적) 3. 제3순위 : 연령이 낮은 학생 ② 입사생은 제1항의 평정기준을 참고하여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6조(서대문구민 특례) ① 입사생 모집공고일 부터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한 저소득층, 자원봉사자 및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대학생에 대하여 입사정원의 10% 이내로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평정기준 및 입사생 결정은 제5조에 따른다. 다만, 평정항목 중 대학소재지는 평정기준에서 제외한다.	삭제하고 조례로 이동하여 규정

제10조(입사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설에 입사할 수 없다.

1. 전염성 질환 보균자
2. 대학에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3. 다른 기숙시설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제11조(입사기간) 입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퇴사) 입사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입사생을 퇴사시킬 수 있다.

1. 소속 대학으로부터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은 때
2.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때
3. 병역의무 통지를 받아 이행하게 될 때
4. 생활수칙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
5.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지 않았을 때

2) 제10조제1호

제10조(입사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설에 입사할 수 없다.

1. 전염성 질환 보균자

(1) 개선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감염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0조(입사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설에 입사할 수 없다. 1. 전염성 질환 보유자	제10조(입사금지) ----- -----. 1. 감염병 -----

3) 참고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조례는 서대문구만이 가지고 있음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입사부담금과 월임대료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임대주택(유스하우징) 입사생부담금을 고려하되, 주변 시세를 참조하여 책정한다고 되어 있어 실제 책정액 확인

추가적 검토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
- 헌법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취지에 맞도록 규칙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할 수 있고 포괄위임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함
-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로서만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시행규칙 제7조(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는 소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관 과장 및 국별 주무과장(보건소 포함)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국장이 위원장 맡는 것이 타당한지, 민간위원 없어도 되는지 검토
- 〈현황〉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위탁관리 여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데이터
- 〈입법 과제〉 입사생 결정기준 등 중요사항 조례로 규정
- 〈정책 제언〉 선진형 입퇴실 원상복구 프로그램 도입고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2조제5호가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1) 개선사항

「농산물품질관리법」은 2011. 7. 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로 전부 개정되었음

(2)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5.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 <u>농산물품질관리법</u> 」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가. 「 <u>농수산물 품질관리법</u> 」----- -----

2) 제2조제5호나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1) 개선사항

「친환경농업육성법」은 2012. 6.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5.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3) 제2조제5호다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다. 「축산법」,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1) 개선사항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2010. 3. 31. 타법개정 되었으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2013. 12. 27., 전부개정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5.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다. 「축산법」,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4) 제8조제2항제1호

제8조(무상급식 지원)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인 경우

(1) 개선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을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2015. 4. 20. 이동하였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8조(무상급식 지원)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무상급식 지원) ② 현행과 같음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인 경우	1. ----- ----- --제3조-----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데이터
- 〈정책 제언〉 공유주방과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나아가 공유경제 등을 활용한 서대문구 관내 급식수준의 획기적 업그레이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1조

제12조(사용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65세 이상의 노인 (신설 2008. 2.19, 개정 2011. 2. 16)

(1) 개선사항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법 제3조).

서대문구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지식정보 접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들의 도서관 이용 시 사용료 등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

(2)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2조(사용료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면제 등) ② -----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1. ----- -----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2. ----- -----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신설)	3. -----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4. 65세 이상의 노인	5. -----

2) 제10조 및 제13조 등

제10조(위탁기간) 제9조제4항제2호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운영비 지원)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2.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3. 자료구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예산의 지원방법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개선사항

이 규칙의 상급조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는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구청장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규칙에서 어떤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는데, 이 규칙 제10조의 위탁기간이나 제13조의 운영비 지원 범위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면 위임근거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0조(위탁기간) 제9조제4항제2호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안] 제10조 및 제13조를 조례에서 정하는 방안
제13조(운영비 지원)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2.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3. 자료구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예산의 지원방법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안] 조례 제5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위임근거를 두고 규칙 제10조 등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규칙으로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가적 검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비록 상위법률이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으로서 서로 다르지만 내용에 유사성이 많고 주민들도 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음
- 이는 상위법률이 서로 유사한 사항을 각각 다른 법률로 나누어 규정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며 최근 법제처에서 유사한 법률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법규 제정시 과도한 분법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3) 참고

장소적 하드웨어적 도서관 개념을 벗어나 이진아기념도서관,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 좋은 도담도서관 등 서대문구 관내 물적 인적 공공 도서관 자원과 대학 등 학교도서관 자원, 지역 서점 및 사적인 민간 관련 자원 등을 아우르는 서대문구 O2O 융복

합 지식도서관 시스템 구축 추진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립도서관 이용자 유형 및 이용 데이터
- 〈입법 과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하드웨어적 도서관에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와 서비스 지향 온오프라인 지식도서관 조례 추진
- 〈정책 제언〉 다문화가족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 부여, 서대문구 O2O 융복합 지식도서관 시스템 구축

c. 문화체육과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1) 제2조, 제3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둘 것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일 것
3. 매장 바닥면적의 50% 이상을 도서 비치구역으로 운영할 것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일 것 (도매 또는 학원납품, 종교·어린이전집 등 특정 수요자를 주된 판매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닐 것)

제3조(적용범위)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호의 규정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3.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4. 도서관·출판사·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5. 홍보, 공동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공간활용 개선 등의 컨설팅
 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개선사항

제2조제1호는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둘 것을 요건으로 하되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호의 창업지원은 가능하도록 규정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2) 참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대문구처럼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두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도 서대문구와 비슷한 제명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지역 서점 지원사업이 행해지게 될 것이므로, 서대문구와 내용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서로 상보적이 되도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이상의 지역 창의거점 역할도 할 수도 있도록 50% 면적 조항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하되, 획일적 규율에 의한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서점 유형화에 따른 차등 적용 바람직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지역 서점 현황
- 〈입법 과제〉 독서문화 진흥 조례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통합 가능, 서울특별시 조례와의 입법분담 기능분담 협의반영
- 〈정책 제언〉 서대문구 지역서점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서점 지식맵 구축, 서대문구 민간 공공 도서관과 연계 정책 수립, 지역서점 특성에 따른 창 의와 논의 클러스터화, On/Off 서대문구 지적 학습과 교육 및 품격있는 독서문화 환경 조성플랜 마련, 서대문구 지역성을 반영한 온라인 전자책 자료나 출판 및 검색 콘텐츠화 지원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1) 제18조제1항

제18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개선사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8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보조금 현황
- 〈정책 제언〉 문화원의 지역 허브화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19조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1) 개선사항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는 "준용한다" 라는 표현을, 특정조문을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대상에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적용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또한, 준용은 같은 수준의 법령에서만 가능하고,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는 없음(자치법규 입안매뉴얼 p307~308, 법제처, 2013)

(2)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규정) ----- ----- ----에 따른다.

2) 참고

서대문구에는 세빛도서관 어루쇠작은도서관 이팝꽃향기작은도서관 천영동하늘샘작은도서관 하늘샘어린이도서관 연희동아이누리작은도서관 충현동알음알음작은도서관 남가좌1동파랑새작은도서관 홍은1동햇살도서관 홍은2동행복작은도서관 홍제1동새싹작은도서관 북가좌1동늘푸른열린작은도서관 돈의문센트레빌작은도서관 수화영상도서관 홍제3동문화촌어린이도서관 북아현북카페 새솔도서관 봉원교회샘플작은도서관 명지어린이영어도서관 남가좌삼성레미안아파트푸른북카페 아낌없이주는나무 DMC레미안e편한세상아파트1블럭작은도서관 홍제2동꿈이있는작은도서관 천연뜨란채문고 등 적지 않은 작은도서관이 있음

이들이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분업과 협업에 의하여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HW SW NK C&S 컨버전스 지식관리를 통한 분산과 연동효과를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아이템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내지 공유경제 접목 및 지역 클러스트화 고려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운영 실적과 한계 데이터 분석
- 〈정책 제언〉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지식기반 분산과 연동 ASIS TOBE 모델링

1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1) 전체

(1) 개선사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가 2011. 12. 30.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규칙 또한 폐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적 검토

- 〈현황〉 음악예술활동 및 지원 현황
- 〈정책 제언〉 소프트웨어 컨셉의 민관학 연계 참여형 구민음악단 학생음악단 오픈음악단 지원 및 지식관리를 통한 서대문구 음악예술콘텐츠 및 서비스프로그램 기반확보

1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

1) 별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

(1) 개선사항

별표는 1997. 10. 22. 개정 이후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기준의 확인을 통한 개정이 필요함

2) 제명 - 띄어쓰기

3) 참고

명칭상 문화체육회관 설치 운영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충청북도 청주시 정도이고, 조례 자체가 많지 않지만 대부분 문화체육센터 내지 시설이라는 표현을 씀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운용 및 이용 데이터
- 〈정책 제언〉 시간과 공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을 통한 회관 물적 시설의 유연한 사용 고려, 데이터 관리에 의한 지식기반 융복합 회관 이용시스템 구축

1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직제규칙

1) 전체

이 규칙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본 규칙은 1998. 10. 7., 제정되어 개정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현재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므로 폐지

1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직제규칙

1)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의 조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본 규칙은 1998. 10. 7 제정되어 개정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현재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므로 폐지

d. 민원여권과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4. 2. 14)

(1) 개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를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u> 」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 ----- ----- ----- -----.

추가적 검토

- 제10조(공인대장) 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이라는 표현 재고
- 〈현황〉 서대문구 공인 사용 현황 데이터
- 〈입법 과제〉 서대문구 행정의 Full Paperless Process화 선도입법 조례제정 고려
- 〈정책 제언〉 서대문구 구정 전반을 Full Paperless Process로 설계 추진하여 전자공인 활성화와 블록체인이나 XML 웹기반 모바일행정과 같은 신기술 적용 등 선도적 국가과제 시범수행 및 미래모델 행정 주도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민원사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앞 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규율내용을 위임한 경우 그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조·항·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381p) 이에, 목적조항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를 인용하도록 수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민원사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

2) 참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르면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법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훈령 등 행정규칙은 주민의 접근 가능성이 적고, 입법예고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훈령·고시 등 행정규칙보다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으로 제정·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11p)

경주시 곡성군 공주시 남해군 보령시 부안군 서산시 등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강동구 구로구 마포구 서대문구가 규칙을 제정하고 있고,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금천구 성동구 은평구 규칙이나 조례는 검색되지 않음

강북구는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수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법정위원회임

위원회 심의사항도 장기 미해결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복합민원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등 국민과 주민의 권리실현 내지 이해조절과 관련되는 중요한 것들이므로, 규칙보다 상위인 조례로 정하는 것도 바람직함

추가적 검토

- 〈입법 과제〉 규칙을 조례로 승격
- 〈정책 제언〉 기술혁신적인 모바일 기반 데이터 중심 Full Paperless 민원처리 및 통계분석 등 민원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e. 보건위생과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1) 제3조제1항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1) 개선사항

앞서 검토한 것처럼 "통할"한다는 부분은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어,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국민이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비추어 “총괄”로 수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 ----- ----- -----총괄-----.

추가적 검토

- 서대문구 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위와 같은 표현 수정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1) 제5조제3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개선사항

앞 서 본 것처럼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5.14.선고, 96추15판결 참조),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 구성) 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u>구의회 의</u>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③ ----- ----- <u>구의회의</u> ----- -----.

2) 참고

10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검색되며,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나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광주광역시 경기도 광주시처럼 헌혈과 함께 규정하는 조례도 있음

서대문구의 경우처럼 조례 명칭에 희망등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조례는 없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친근함을 주는 듯한 좋은 명칭임

추가적 검토

- 〈현황〉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데이터
- 〈정책 제언〉 타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f. 복지정책과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긴급복지지원법</u> 」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긴급복지지원법</u> 」 제2조제8호----- ----- ----- -----.

2) 제3조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개정 검토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u>법 제2조제6호</u>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u>법 제2조제8호</u> ----- ----- -----.

3) 참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함

서대문구 조례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규정하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명기함

추가적 검토

- 〈현황〉 생활보장위원회 운영현황
- 〈입법 과제〉 추후 각종 위원회 통폐합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여 관련 조례들을 정비
- 〈정책 제언〉 서대문구의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On/Off 지식프로그램화 및 지식맵 작성 등 구조화 데이터 기반 지식관리를 통한 효율적 융복합 지원시스템 구축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1) 제4조제1항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법 제15조의3에 따른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선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그 대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인용함이 바람직함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되, <u>법 제15조의3에 따른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u> 에 포함되어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 ----- -----, 「 <u>사회보장</u> <u>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u> <u>법률</u> 」제35조----- -----.

2) 참고

2018년 12월 11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9년 12월 12일 시행되는데,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추가적 검토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단순항목 중심 및 비정형 조사에 그치는 것을 탈피하고 구조화 데이터 기반 지식관리시스템으로 레벨업할 필요
- <현황>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및 보수 현황
- <입법 과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자치입법 개선을 통한 적극적 지원
- <정책 제언>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공제회 가입 등 지원,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현황 실태조사의 지식 구조화, 사회복지사 등의 프로그램 수행지식과 경험 및 노하우 지식DB화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5조제1항

제5조(시설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2019.1.15 조항 신설로 해당 내용은 제5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인용조문 변경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시설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위탁) ①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 ----- ----- -.

2) 참고

이 조례는 제명과 달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명 변경이 바람직하며, 아니면 직영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운영을 하고, 그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화해서 공유하는 것임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직영 및 위탁 현황
- 〈정책 제언〉 탑다운과 바텀업 결합에 의한 선도적 표준 시설 운영프로그램 지식DB화

g. 사회복지과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1) 제5조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3. 장애인 가족의 교육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개선사항

조례 제5조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여러 사업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전반적인 구성체계와 내용이 그렇듯 공급자 중심의 지원 마인드에 입각하고 있음

장애인 가족 현황과 욕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공급자가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로 판단하여 해당되는 경우 가능한 지원을 하는 정도로 머물러서는, 장애인과 가족의 개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근본적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다양한 유형과 이에 따른 개별 디테일 수요조사 없이 획일적 일률적 지원 챗바퀴를 벗어나기 힘들. 최근 통합서비스를 지향하면서 개인 맞춤형에 다가가고는 있으나, 획기적인 바텀업 사례관리를 통한 지식구조화와 이에 기반한 유형별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 및 유연한 개별 선택 허용 및 상담컨설팅 등 일제화된 맞춤형 서비스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를 고도화하는 정책전환 및 입법적 뒷받침이 절실함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는 하드웨어적 공급자만이 아닌 콘텐츠와 서비스 프로그램 중심의 수요자 관점에서도 규범화되어야 할 것임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장애인과 가족의 유형별 현황과 특성 및 맞춤형 수요 데이터
- 〈입법 과제〉 종합체계적인 통합 장애인 및 가족 지원 조례 제정
- 〈정책 제언〉 O2O 융복합 지식기반 장애인과 가족 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2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를 인용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

2) 제6조

(1) 개선사항

"통할"을 “총괄”로 수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총괄-----.

3) 제명 - 띄어쓰기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데이터
- 〈정책 제언〉 장애인 관련 위원회 통합운영

h. 아동청소년과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제5조제1항

제5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1) 개선사항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수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5조(직무) ① ----- -----총괄-----.

2) 참고

일괄 정비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데이터
- 〈정책 제언〉 아동관련 위원회와의 통합운영 검토

i. 어르신복지과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1) 참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경우 36개 지자체 조례가 검색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동대문 서대문 강동 은평구에 조례가 있음

예를 들어 전라남도 조례와 해남군 조례, 전라북도 조례와 전주시 조례가 같은 지원 조례로서 중복문제가 있음

전주시 조례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3조(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추가적 검토

-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법보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인용이 바람직
- 〈현황〉 성인용 보행기 지원 현황
- 〈입법 과제〉 서대문구 노인복지조례 통합 규정 고려
- 〈정책 제언〉 서대문구 노인 데이터 기반 맞춤형 일-생활-복지 지식지원시스템 구축

j. 어르신청소년과

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 법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참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3.30. 제정 시행되었는 바, 대한노인회라는 특정 단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입법배경 확인 필요

2) 제6조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선사항

법령문장은 각 조문별로 완결된 문장이어야 하는데 제6조에서는 누가 지원을 받는 경우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서로 다른 내용의 지원을 규정한 경우에도 중복지원으로 보는 것인지도 불분명함

또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중복지원은 금지되는 것인지, 지원관청의 재량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음

따라서 위 제6조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지원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추가적 검토

- 자치법규도 법규이므로 체계정합성을 갖추어야 하고 체계정합성 중 이른바 외부적 체계는 조례의 문장이나 표현 등 외관이 완결성을 가져야 함을 나타냄
- 따라서 조문 형식을 취하는 등 법규 특유의 표현방법 외에 문장구조 등에서 전후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만으로 완결성을 갖도록 하는데 유의하여야 함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가 설치되어 있다면 소관행정사무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
- 〈현황〉 대한노인회 지원 현황 데이터
- 〈입법 과제〉 전체적 종합적 노인조례 제정 필요
- (정책 제언) 서대문구 노인 주거-생활-일과 소득-재능기부와 나눔-인권과 복지 등 다양한 항목 구조화를 통한 노인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노인 지식일자리 제도화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2조제1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호 규정을 인용하고 있으나, 아동에 관한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사람을-----.

2) 제2조제2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센터”란 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개선사항

지역아동센터의 정의는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을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재기재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용어 및 인용 조항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2. “센터”란 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 ----- ----- -----.

3) 제4조

제4조(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개선사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로 조문을 변경하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시설기준과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 ----- -----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 -----.

4) 제10조제3항제1호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대문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2인

(1) 개선사항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이 위원회 위원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을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

(2)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③ 현행과 같음
1. <u>서대문구의회의장이</u> 추천한 구 의원 2인	1. <u>서대문구의회가</u> -----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및 운영위원회 데이터
- 〈정책 제언〉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관련 데이터 관리에 의한 지식공유 플랫폼화 고려, 아동유형별 수요자 중심 지식기반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k. 여성가족과

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1) 참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광역시와 기초 포함 132개 자치법규가 검색되며,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와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등의 명칭도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제4장에 센터 이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은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타 조례 명칭상 대부분 광역의 경우 지원조례, 기초의 경우 조직 운영, 설치 운영 조례 명칭이 혼재되나 내용상 큰 차이 없음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현황,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건강가정사 등 구성과 운영현황, 예산 지원 현황, 제10조 주민참여 현황 데이터
- 〈정책 제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동 및 대주민서비스 프로그램 지식관리
- - 서대문구는 위기가정 위기가족을 철저히 보호하겠다!!
- - 여성가족부(기본법 존재의의 강화) 서울특별시(기초와의 입법 행정 분담)와 함께 서대문구가 선도프로그램 마련 시범사업화 및 관련 자치입법 구체화 모델링 가능
- - 특히 기본법 제21조의2 관련 사업 내지 수요자 관점에서의 서대문구 싱글포인트 원스톱 토탈 종합체계적 민관산학연 연계 지원서비스프로그램 클러스터화, 지역복지 내지 커뮤니티 케어와의 융복합 추진

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1) 제10조제1호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개선사항

제6조제2항의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원대상의 유형화 근거조문으로서 매우 유의미한 규정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현황과 제도개선을 향한 정책과 입법수요를 기초로, 지원 현황 데이터 구조화, 대상자의 수요조사, 서대문구 지원자원 지식관리 등을 통하여 맞춤형 만족도 높은 지원프로그램 가동이 가능함

2) 참고

대부분의 법령이나 조례가 그렇듯 조문 구성체계나 내용이 공급자 중심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서대문구의 경우 수요자 지향 자치입법 선도 역할 권고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현황 및 지원내용 데이터
- 〈입법 과제〉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중심의 조례 전면개정
- 〈정책 제언〉 다문화가족 수요조사와 공급자원 지식화, 비정형사례의 구조화데이터 관리에 의한 웹 콘텐츠화, 지식구조화 기반 맞춤형 개인통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

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 제1조, 제6조제1항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분석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인용하고 있으나, 「성별영향평가법」으로 2018. 9. 28.시행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별영향평가법」 ----- ----- -----.
6조(분석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6조(분석평가 대상) ① ----- 「성별영향평가법」----- ----- ----- ----- -----.

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1) 제41조제1항

제41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의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선사항

「지방재정법」 제53조의2는 2016.5.29 삭제되었으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내용은 「지방회계법」 제18조를 인용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1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41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 「지방회계법」 제18조----- ----- ----- ----- -----.

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1조, 제6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 제1조 목적조항은 상위법령을 그대로 반영하여 국내 출생 요보호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를 규정하면서, 제6조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로 한정하고 있음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서대문구가 아이를 낳아 양육 보육 교육하는데 전국 최고라는 평판을 얻는 것도 좋은 일이며, 보다 적극적인 임신-출산-양육-보육-교육 및 아동인권-아동복지-아동보호-아동후견-아동구제 등 종합 패키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위와 같은 전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때 훨씬 효과적이며, 서대문구가 아동, 장애아동, 입양아동, 다문화아동, 조손아동 등 다양한 유형의 아동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식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권장함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입양아동 유형별 연령별 기타 항목별 데이터
- 〈정책 제언〉 입양아동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와 이를 위한 지식관리

I. 의약과

3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지역보건법」 제34조에서 과태료 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지역보건법</u>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 ----- -----.

2) 제2조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개선사항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4조제2항--- ----- -----.

3) 제4조부터 제9조까지

(1) 개선사항

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처분의 사전통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보건법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조항 개정(제4조) 및 지역보건법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처분의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이의제기 등의 조항 삭제(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검토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부과·징수절차)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삭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6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제
제8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삭제

4) 제명 - 띄어쓰기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데이터 • 〈정책 제언〉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위반정도 등 유형적 세분화 고려, 과태료 관련문서의 전자화	

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1조, 제2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이하 “치매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개선사항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2018.12.13.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u>치매지원센터</u>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치매안심센터</u> ----- -----.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u>치매지원센터</u> (이하 “치매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 ----- <u>치매안심센터</u> (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 -----.

2) 참고

「치매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간의 기능분담 및 협력체계를 고려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데이터
- 〈정책 제언〉 치매유형별 맞춤프로그램 및 센터간 협력프로그램 등 고려

m. 자치행정과

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 조례

1) 제1조제2조제3조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구민의 날 (이하“구민의 날”이라 한다) 제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매년 11월 3일을 구민의 날로 한다.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 날 행사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1) 개선사항

단 3개 조문임. 참고로 대구광역시 서구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 본문만 있는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연혁적 의미를 담아 비교적 자세히 제정하고 있어 서대문구의 경우 정책개선과 입법보완 필요성 검토 후 조례 개정 고려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광주군의 일부였던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됨에 따라 광주군을 광산군으로 개칭하였던 1935년 10월1일을 기념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의 계기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정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추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3.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개최 등 필요한 행사

제4조(운영)구청장은 제3조 각호의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할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온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축하하며 또한 기념하면서 상호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고유의 문화 예술을 발향함으로써,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기 위하여 10월 10일을 "구민의 날"로 정한다. <개정 96.1.4 조례 제347호>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구민의 날 운영 현황
- <입법 과제> 서대문구 연혁이나 히스토리 또는 기념의미를 담은 아이템 반영, 필요시 전면적 보완 고려
- <정책 제언> 서대문구 일년간의 민관산학연 제 분야 또는 특성화 노력과 실적을 결산하고 이를 주민들과 공유하는 참여와 협력형 축제모델로 기획 고려

n. 정책기획담당관

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1) 제2조제2호

제2조(정의)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1) 개선사항

개정 전 법률에서는 자유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행 「발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개인발명”이라고 정의 수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제2조(정의) --“개인발명”----- ----- -----.

추가적 검토

-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는 규정을 마포구의 규칙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6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
- 대부분의 지자체가 주민 또는 공무원의 제안제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서대문구는 주민제안조례와 규칙을 별도로 규정함
- <현황>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및 제안 현황 데이터

- 〈입법 과제〉 주민제안조례와 통합 여부 검토
- 〈정책 제언〉 창의적 대학 스타트업 행정지원 등과 연계

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1) 제7조제3항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개선사항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의 경우 관련 시행규칙이 부재함.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검토

2) 참고

청주시 정보공개조례 처럼 2012.12.31.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제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2018.3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표발의 공유경제기본법안 기재위 계류 중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나 거창군의 경우 공유 촉진 조례와 시행규칙을 두고 있고, 공유촉진지원센터의 설치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이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촉진 관련 활발히 정책과 행정 및 기업참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 필요

4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1) 참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강동구 구로구 중랑구 서대문구가 구민제안 조례를 따로 두고 있고, 은평구의 경우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구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함께 규정함

서대문구의 경우 조례는 정책기획담당관 시행규칙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 소관 다른 이유 확인

추가적 검토

- 제5조(제안시스템 운영) 제안서의 제출·접수·검토 및 심사 등은 제안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로 서면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모든 조례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제안시스템이 있는지 단순 홈페이지 메뉴인지
- 〈현황〉 실제 주민이나 공무원의 제안 현황과 성과 데이터
- 〈입법 과제〉 공무원 제안규칙과 통합하여 조례 제정하는 안 검토
- 〈정책 제언〉 주민참여에 의미있는 제도가 될 수 있으므로 의회와의 연계를 통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 실효적인 기술혁신적 모바일 제안시스템 도입

4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규율내용을 위임한 경우 그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조·항·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381p)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 -----.

2) 참고

서울특별시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밖에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와 적정규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서대문구 조례와의 관계 및 상호조정 고려

추가적 검토

- 〈현황〉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데이터
- 〈정책 제언〉 위원회 임명 위촉 등 대부분이 중복구성인 위원회 통합 설치운영 검토

4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1) 제1조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는 주민에게 구의 정책 결정과 집행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권리는 절차적 참여 권리로서 그 의미가 있음

절차적 권리가 실체적 권리나 쟁송적 권리와는 구별될지라도 그것이 권리인 한 단순한 방청과 같은 정도가 아닌 구체적 참여절차를 통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위 조항의 권리라는 표현은 그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서대문구 정책 결정 뿐 아니라 정책 집행은 곧 행정의 모습도 된다는 점에서 절차적 참여권은 정책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에의 참여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참여권의 구체화 논의가 만만치 않을 것임

거버넌스 내지 협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간접민주적 대의제적 단체자치만이 아닌 직접민주적 주민자치의 조화실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어렵더라도 지속적 노력을 통하여 제도화 정착을 도모해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

민간협치 활성화 조례가 단순히 정책 결정과 집행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문화한 것이 전부일 수 없으므로, 이 참여권의 구체화노력에 의한 제도화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자치입법에 피드백 환류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급자 중심의 정책 수립과 행정에서 수요자와 함께 하는 참여행정 협력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치 데이터 관리를 통한 지식입법에 의한 정교한 규범적 뒷받침**이 하나의 관건이 될 것임

추가적 검토

- 〈입법 과제〉 지식기반 협치입법
- 〈정책 제언〉 협치데이터 관리를 통한 지식기반 정책과 입법 행정시스템 구축

4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행정업무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2016. 4. 2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되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 ----- ----- ----- -----.

2) 참고

실명 기록 뿐 아니라 사업관련 인적 물적 다양한 데이터 관리를 통한 체계적 생성 보관 공유 활용 등 정책 실명 대상 사업의 지식구조화가 필요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책임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부이력관리사업, 정책실명제 평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데이터
- 〈정책 제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식구조화를 통한 인적 물적 데이터 기록 관리 강화

4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에 관한 규정

1) 전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규정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관리체계), 제4조(실천계획 수립), 제5조(실천계획 이행), 제6조(실천계획 변경 등), 제7조(자체평가), 제8조(외부평가), 제9조(평가결과 환류), 제10조(전문가 및 구민 참여)로 구성되어 있음

타지자체의 경우, 공약 실천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 또는 공약이행평가위원회, 배심원단 제도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을 것임

또한, 입법형식과 관련하여, 주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며, 훈령 등 행정규칙은 주민의 접근 가능성이 적고, 입법예고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가능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공약사항 실천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으로 제정·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해당 훈령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입안하는 방안 검토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구청장 공약 실천 데이터
- 〈정책 제언〉 공약 실천 참여형 프로세스와 피드백환류 사이클의 지식화

o. 지역건강과

4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1)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17.11. 1.)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11. 1.)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 (신설 2017.11. 1.)

(1) 개선사항

상위 법률에서 의무적 금연구역(법 제9조제6항)과 임의적 금연구역(같은 조제7항)으로 구분하였다면 의무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조례에서 이를 임의적 금연구역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임의적 금연구역의 범위이므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이란 부분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임의적 금연구역으로 정한 장소는 법에서 의무적 금연구역으로 정한 어린이집 부근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장소이므로 이러한 장소는 법을 개정하여 법 제9조제6항에 추가하여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짐(이 경우 조례에서는 해당 내용 삭제 검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

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8조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 설치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함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개선사항

상위 법률에서는 금연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실의 설치기준 등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흡연실 대신 흡연구역으로 대체하여 규정하고 있음.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것을 전제하는데,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금연구역 부분에 영향을 미쳐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상위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점이 있음

흡연구역의 설치에 상위 법률에서 예정하지 않았고 조례로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조례 내용 중 흡연구역 설치에 관한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흡연실 설치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 --- 흡연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	② -----흡연실-----
1. -----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 설치	1. ----- 흡연실 -----
2. -----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함	2. ----- 흡연실-----
3. 흡연구역-----	3. 흡연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 -----	③ ----- 흡연실 ----- -----

3) 제10조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개선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나, 조례는 상한인 10만원만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대문구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유형화하는 등 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필요. 가평군과 강릉시의 경우 5만원, 거제시의 경우 3만원을 부과함

제1안으로 서대문구 가스충전소 등 화재폭발 우려가 큰 위험지역과 지하철역 등 다중왕래가 빈번한 지역,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10만원 5만원 3만원 등으로 차등 부과하거나, 제2안으로 10만원 미만 예컨대 8만원 또는 5만원 등으로 하향 조정

4) 참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주조례 위임조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앞의 공동책임조항 및 지역 특성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금연구역 지정은 법률로 정하되, 지역상황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지역의 금연구역지정은 자치사무로 맡기고 금연이라는 침익적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유보조항으로도 볼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7. 12. 3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별표5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고, 일반기준으로 상한 내에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2 가중 또는 감경재량을 부여함. 개별기준으로 1차 2차 3차 유형별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서대문구의 경우 유형별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1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고 다시 위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에 따라 1/2 이내 가중감경할 수 있는 조례제정 즉,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임

추가적 검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언상으로는 임의조례이나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조례제정 필요
- 〈현황 분석〉 서대문구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데이터 참조

- 〈입법 과제〉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제1항은 조례로 건강증진사업 소요경비 일부를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 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
- 〈정책 제언〉 금연구역 유형화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검토 및 금연구역 표시 디자인 개선

4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2조제2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1) 개선사항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흡연제한구역을 설정할 근거는 있지만 음주를 제한하는 구역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며, 조례로 음주를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음

이 조례 제3조제3항과 제4항을 보면 음주청정지역 내에서의 행정적 조치사항은 권고 계도 교육 및 홍보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그렇더라도 정의규정에서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 계도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수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2.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음주청정지역”이란 ----- ----- ----- 를 하지 않도록 권고 계도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참고

70여개 자치법규가 검색되며, 광역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외에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들에는 과태료 조항이 없음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음주청정지역 규정이 없고,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서울시 조례의 경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두고 있음

추가적 검토

- 서울시 조례 제4조는 음주청정지역 지정을 시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대문구 조례 제3조제1항단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역과 기초간 단체장의 권한과 기능분담, 지정위임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여부 등에 관한 조정이 필요함.
- 〈현황〉 서대문구 관내 서울특별시의 음주청정지역 지정 현황, 어린이공원 현황
- 〈입법 과제〉 서울처럼 단일 생활권에서는 광역단체장의 지정권한으로 하여 서울시 조례에 음주청정지역의 정의, 지정권자 및 기초예의 위임, 지정지역 간주규정(필요시), 위반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 〈정책 제언〉 규범적 측면보다는 정책적으로 시민의식 내지 서대문구 구민의식 고양으로도 풀어갈 문제

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인용하고 있으나,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은 영 제16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6조의5----- ----- -----.

2)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2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금연

지도원의 위촉에 관한 내용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2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2호로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 증명하는 서류	1. ----- ---- 제16조의5제1항제2호----- -----

추가적 검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금연지도원 조례가 110여개 검색됨. 필수조례는 아닌데 서대문구의 경우 조례를 제정함
- 〈현황〉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현황
- 〈입법 과제〉 청송군의 경우처럼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

p. 행정지원과

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1) 제1조

제3조(대행 및 대리) ②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주사가, 과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주무업무담당주사가, 주무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담당 중에서 상위직급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2009. 7. 31)

(1) 개선사항

10년전 규칙 그대로이며 서대문구 직제가 달라졌다면 달라진 내용을 수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무담당주사, 주무업무담당주사 등의 명칭 변경 반영

5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인계인수규칙

1)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규정을 인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 ----- ----- ----- ----- ----- -----.

2) 제명 - 띄어쓰기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사무인계인수 현황

5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서 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8항----- ----- ----- -----.

2) 제명 - 띄어쓰기

추가적 검토

- (서대문구 현황과 특성 및 정책 신산업 이슈 반영)
- (타 지자체 비교 등)

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 제9조제3항

제9조(파견근무)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1) 개선사항

하위법령은 당연히 상위법령을 따르는 것이므로,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법령체계상 맞지 않은 표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9조(파견근무)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제9조(파견근무) ③ ----- ----- ----- ----- -- 따른다.

2) 제13조제4항

제13조(근무시간 등)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개선사항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구.행정자치부와 구.국민안전처가 통합되어 행정안전부로 출범('17.7.26.)되었으므로 이를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3조(근무시간 등) ④ 「전자정부법」제32조 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u>행정자치부장</u> 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시간 등) ④ ----- ----- ----- ----- <u>행정안전부장</u> 관-----.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파견근무 원격근무 등 데이터
- 〈정책 제언〉 O2O 지식근무시스템 고려

5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1) 제5조제7호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7.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개선사항

공무원 여비와 관련된 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에서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내용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7.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 -----.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공무원 여비 현황
- 〈입법 과제〉 여비 현실화 및 상위법 개정 내용 반영

5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 -----.

2) 제명 - 띄어쓰기

5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제9조제1호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방위협의회

(1) 개선사항

「향토예비군설치법」은 2016. 5. 29. 「예비군법」으로 타법 개정되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현행과 같음
1.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방위협의회	1. 「예비군법」----- -----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통합 구성 운영 데이터
- 〈정책 제언〉 조직법적 접근을 지양하고 기능적 분업협업 프로그램 개발 고도화

5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1) 제8조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개선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 규칙은 폐지되었음

(2)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 ----- ----- ----- -----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유형 및 고발 처벌 데이터

q. 홍보과

5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규칙

1) 제6조제2항

제6조(위원회 회의 개최와 의결)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 개선사항

가부동수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부결된 것으로 정하는 안으로 개정

(2)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 회의 개최와 의결)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u>위원장이 결정한다.</u>	제6조(위원회 회의 개최와 의결) ② ----- ----- ----- ----- <u>부결된 것으로 본다.</u>

2) 제9조

제9조(광고수입금의 처리) 제8조제1항의 수입금은 「지방재정법」제15조를 준용하여 잡수입으로 처리된다.

(1) 개선사항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경우,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지방회계법」 제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내용 검토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9조(광고수입금의 처리) 제8조제1항의 수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5조를 준용하여 잡수입으로 처리된다.	제9조(광고수입금의 처리) ----- ----- 「지방회계법」 제25조 ----- -----.

3) 제명 검토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제명에 이에 관하여 나타내는 안이 전반적인 법체계를 고려하여 적합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수정

추가적 검토

- 몇몇 지자체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마포와 서대문구 정도임
- 공공매체 광고는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잘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
- 〈현황〉 서대문구 발간 홍보물 및 유료광고 현황 데이터
- 〈정책 제언〉 미래지향적으로 온라인 모바일 매체, 위치정보 등 차세대 기술도 고려
 - 서대문 품격을 감안 특화된 공유정보 등 주민참여적 순기능적 광고 컨셉도 기획
 - 스타트업 지원 등 광고료 수입의 공유 선순환 사이클 고려

C. 재정건설위원회

a. 건설관리과

5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1) 제3조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선사항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서는 같은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서대문구 조례는 노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해 토지가격의 0.007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제7호는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경우 0.01,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의 경우 0.05를 한도로 정하고 있어 현재 조례 규정이 이를 넘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령 별표3의 유형적 구분을 반영하여 서대문 상황을 고려한 조례 개정 필요

2) 제4조제2항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개선사항

조례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자 뿐만 아니라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초과점용)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도로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초과점용과 관련하여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 뿐만 아니라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점용한 초과 점용자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밖에 초과점용 관련 변상금 징수에 관한 상위법령도 함께 규정함이 적절

3) 제9조제2항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정수 및 반환)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도로법」 제97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규정이고,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정수 및 반환)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u>법 제97조</u>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정수 및 반환) ② - ----- ----- ----- ----- <u>법 제63조</u> ----- ----- ----- -----.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도로점용 시설 유형과 점용 현황 및 관리 데이터
- 〈입법 과제〉 서대문구 상황에 맞는 점용료율 등 유형적 세분화 기준 마련
- 〈정책 제언〉 도로 점용의 유형별 시공간별 자원화 전략 마련 및 서대문 행사와 연계

60.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1)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토지수용법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조성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하게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1) 개선사항

「토지수용법」은 2002. 2. 4. 자로 폐지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또한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으로 이를 인용함이 부적절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토지수용법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조성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하게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제2조(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 ----- ----- -----

2) 제6조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개선사항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지되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3) 제명 - 띄어쓰기

4) 참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은 규정상 1981년 12월 31일 또는 1982년 4월 8일 이전의 무허가건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40여년이 경과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서대문구의 무허가건물 실태 등을 반영할 필요는 없는 지 검토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2. 18.〉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개정 2009. 12. 18.〉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개정 2009. 12. 18.〉

6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제40조·제7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지방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감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목적조항에서 도로법 제40조·제7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지방재정법 제74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으나, 도로법의 경우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내용은 「도로법」 제61조·제97조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74조의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u>도로법 제40조·제75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및 지방재정법 제74조의</u> 규정에 의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감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도로법」 제61조·제97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부터 제35조----- ----- -----.

2) 제4조제1항

제4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① 이 조례에 의한 점용허가의 갱신 만료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개선사항

점용허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3) 제명 - 띄어쓰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띄어 씀

4) 참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서대문구에서만 검색되며,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존재하지 않음

6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점개선자율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1) 전체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별노점관리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노점문제에 대한 구민 및 이해당사자 간의 현안해결방안 마련과 노점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점개선자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한시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점개선자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한시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내용 체계는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3조(구성), 제4조(회의), 제5조(실무위원회), 제6조(협조요청), 제7조(수당 등)으로 구성됨

해당 내용은 노점문제에 대한 구민 및 이해당사자 간의 심의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형식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으로 제정·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노점 업종 장소 주변 영향관계 등 유형화 데이터
- 〈정책 제언〉 노점 필요여부 등 이해조절적 고려 및 장소와 유형 일시 등 노점관리시스템 지식화

b. 건축과

6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1) 참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제87조의3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주체로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병렬적으로 규정했으므로, 서대문구는 서울특별시와 별개로 독자적인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되며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근거로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기능적으로 서울시가 민간건축물 지진·화재와 공사장 관리 컨트롤타워역할을 맡고, 각 자치구가 지역의 노후건축물·지진·화재와 공사장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는 보도가 있는바, 서울특별시와 건축안전을 위한 기능분담 및 협업을 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가능하나, 협의없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50조제4항에서 자치구 조례 입법사항을 언급하였다면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건축법 제87조의3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추가적 검토

- 건축법 제80조의3제2항제2호는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특별회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서대문구 조례 제4조제2호는 100분의30으로 함. 노원구는 100분의70 도봉구는 100분의40 서초구는 100분의10
- 〈현황〉 서대문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현황
- 〈입법 과제〉 서울특별시와의 기능분담 내용을 상호 조례에 입법구체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 입법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조례에 통합입법 검토
- 〈정책 제언〉 건축물 유형 준공일 용도 현황 등 관련 데이터 관리를 통한 위험방지 지식맵 작성

c. 경제발전기획단

6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1)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의 공공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신설 2011. 3. 30)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과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 (신설 2011. 3. 30)
3.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시설 (신설 2011. 3. 30)(전문개정 99. 7. 14)

(1) 개선사항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대체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규정하는 유형과 사육허가를 규정하는 유형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조례가 전자에 해당하며, 조례 명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경우도 있음

서울특별시의 경우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없고, 나머지의 경우 광진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육허가 규정을 두고 있음

허가제란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는 것으로서 무허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등 벌칙을 규정해야 하는 등 전형적인 규제행위에 해당함

법 제8조의 취지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제한구역 지정 목적상 해당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허가하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기존 축사의 이전이나 위해 제거 명령 등을 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을 허용하려면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통해서 하여야 할 것임

서대문구 조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 유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

2) 참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추가적 검토

- 가축사육에 관해서는 분뇨배출 처리시설 설치허가 등의 규제와 위반시 제재조항으로 실효성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위 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새롭게 가축사육을 하는 경우 처벌조항이 없는 것은 입법미비로서 보완 필요
- 제한구역 지정은 법이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므로 기초사무 자주조례 내지 위임조례 성격이며, 문언상으로는 임의조례이나 제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조례제정 필요
- 〈현황 분석〉 서대문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현황이 어떠한지, 관련 생활민원이나 축산업민원이 있는지 규정 데이터 참조
- 〈입법 과제〉 제한구역 관련 상위법 내용 인용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실제 구역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으로 추후 조례 개정 및 내용 구체화고려
- 〈정책 제언〉 알기 쉬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도 작성(모든 규제행정의 경우 규제지도 작성 가능)

6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규칙

1) 제2조

제2조(애완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애완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애완가금류를 말한다.

(1) 개선사항

[시행 2004. 9. 1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칙 제460호, 2004. 9. 17., 일부개정]
이후 15년 경과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애완 및 방법용 가축”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인 조례 제2조에 맞게 정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애완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애완가금류를 말한다.	제2조(애완 및 방법용 가축) -----“애완 및 방법용 가축”----- -----.

2) 참고

규칙 제목 피어쓰기, 계류 표현 검토

목적에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추가 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가축분뇨 자원화 적정처리 환경오염방지 지속가능 축산업 발전 국민건강 향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상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 생활환경의 보전, 상수원의 수질보전, 수질보전 등 다양한 목적조향이 있음

조례 명칭을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사육제한, 가축사육 제한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 개인하

수처리시설 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등 다양함

고령군의 경우 사육제한 가축범위와 예외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강릉시는 가축사육 신고조항을 두고 있음.

조례 외에 시행규칙을 두고 있는 지자체는 대전광역시 서구 중구, 경상북도 봉화군 영주시, 강원도 양구군, 전라남도 여수시 정도이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 등 대부분의 자치구가 시행규칙을 제정함

조례 제2조제1항 단서는 "다만, 애완 및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애완 및 방범용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조례 제7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며, 규칙 제1조(목적)조항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규칙내용은 제1조(목적), 제2조(애완용 가축),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정도임. 실험 연구용 등 범위를 조례에 규정한 지자체도 있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와 같은 입법기술 참조

추가적 검토

- 가축사육 가능성이 큰 대부분의 지방이 조례만 규정하는데 비하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대부분이 시행규칙을 두고 있는 것은 해당 행정이나 업무가 그다지 없어 관심분야가 아니어서 공통적으로 입법정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검토
- 기초우선자치사무, 광역처리필요시 기초간광역간 공동자치사무, 국가도 후견적 보충적 통일규율적 책무. 제8조 가축사육제한은 기초단체의 자주조례로 구역지정고시, 제9조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은 농축식품장관 권한.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은 광역단체장이 조례로 환경부령 가축분뇨법시행령 보다 엄격기준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초과조례 허용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배출시설 설치허가 허가취소 각종명령 과징금부과 등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서 자치사무,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수립은 광역단체장 권한, 제19조 퇴비액비 이용촉진 계획 수립 등은 기초단체장 권한이라 할 것임
- 조례 제4조제2항은 "구청장은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3.30)”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의견을 듣는 타 지자체 규정 있는지 비교 검토

- 국가와 지방간 칸막이식 사무구분은 어려우며, 대체로 국가는 전체적 틀을 정하고 광역이 중간조정 역할을 하면서 기초우선으로 사무를 수행하되, 그 사무 또한 복합적이거나 타 사무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오늘날 융복합 지식기반 행정사무수행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국가와 지방간 상호 분업과 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현황 분석〉 서대문구 가축 사육 현황 및 보건소장 의견청취 사례 데이터 참조
- 〈입법 과제〉 추후 조례 개정방향에 따라 규칙내용에 반영 또는 폐지

6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시 사실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의 사실조사에 이어 제7항 이하에서는 재조사에 관하여서도 규정하였고 이 조례는 재조사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목적 조항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을 인용한 것은 논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음

따라서 위 목적 조항에서 "제7조제4항"은 "제7조" 또는 "제7조제4항 및 제7항 등"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조----- ----- ----- ----- -----.

추가적 검토

- 이 조례 제6조(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현재 해당하는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
- 규칙에서는 사실조사결과보고서의 서식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사실조사는 소

매인 영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보고서에 기재될 사항은 자치법규로 정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고, 사실조사를 위 조례 제4조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일정한 통일 서식이 긴요함) 서식만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필요는 없고 이 조례에서 서식을 함께 규정해도 될 것임

d. 교통관리과

6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1) 전체

(1) 개선사항

이 규칙은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로 해당 규칙의 내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추가적 검토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를 제외한 자치구 전부 및 성남시 하남시가 이 조례를 규정함
- 강남구 강북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만 규칙으로 제정하였고 나머지는 조례로 제정함
- 〈현황〉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데이터
- 〈입법 과제〉 규칙 대신 조례 제정
- 〈정책 제언〉 위원회 상설 여부 재검토, 웹서식 기반 교통불편사항 신고시스템 고려

e. 교통행정과

6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1) 참고

7/16 현재 40개 기초지자체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대부분의 조례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제6조(교통안전 교육) 제7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8조(시행 규칙)으로 구성됨. 제4조(시민의 책무) 조항은 없는 경우도 있음

수원시의 경우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

광역과 기초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관한 중복 배제 및 기능분담 차원에서 기초우선 원칙에 따라 열악한 자치구를 광역지자체가 우선 지원한다든가 다른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한다든가 등 실제 처리에 관한 서울특별시와의 협의 필요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9.3.28.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제4조(재정지원 등)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추가적 검토

- 광역지자체도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이며, 강원도의 경우 2019.5.10.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를 신설하여 같은 내용을 규정하여, 예컨대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와 중복됨.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제9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비슷한

내용을 규정. 경상남도의 경우 제7조제2항에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과 연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두가지 정책목표를 결합시킴. 경상북도의 경우 제12조(고령운전자 안전 지원 등) 제3항에 "제2항의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내용 규모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탄력적인 행정을 도모

- 〈현황〉 서대문구 고령자 운전면허 및 차량소유와 실제 운전 현황데이터
- 〈입법 과제〉 고령자의 지원방식 유형화 및 서울특별시와의 기능분담 입법 반영
- 〈정책 제언〉 서대문구 고령자의 현황데이터를 반영하여 지원방식 유형화 및 서울특별시와 조율

6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1) 참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1. 3.)

위 조례 규정의 취지와 같이 광역과 기초간 또는 타 법령에 의한 중복지원은 국민의 세금낭비이므로 중복배제를 위한 정책과 법제 개선이 바람직함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데이터
- 〈입법 과제〉 고령운전자 지원조례에서의 광역 기초 중복문제 해소를 위하여 위 규정과 같은 접근 고려, 교통안전 조례와 고령운전자 지원 조례와의 분리 또는 통합 가능
- 〈정책 제언〉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통합 구성 운영 및 회의 필요시 위촉 및 해촉도 고려

70.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1)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24조제1항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 기재 생략]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제84조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 제정 후 관련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다수 달라짐에 따라 정비 필요

조례 각 조문의 규정형식이 각 호 앞의 설명문이 없이 바로 각 호가 나오는 등 입안심사기준에 위배되어 내재적 체계를 정비할 필요

제10조와 제11조는 상위법령 해석상 당연한 사항으로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지만 수범자에게 법 집행방침을 설명하기 위하여 존치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14조 및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도로법」제14조 및 제18조의 -----. [이하 생략]

제3조(적용대상) 1. - 3, [생략]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 3, [생략] 4.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서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공사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1. - 3.[현행과 같음]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현행과 같음] 4. <삭제>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행자 지정)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 ----- -----.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1안] 제10조(시정명령) ----- ----- ----- -----「도로법」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시정명령----- -----. [2안] 삭제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제84조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1안]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제117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2안] 삭제
--	---

2) 참고

서대문구 조례의 경우 2006년 제정 시행된 이래 개정된 적이 없으며, 많은 지자체가 현행 도로법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조례 개정을 요함

도로법 제117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추가적 검토

- 〈입법 과제〉 도로법을 반영하여 대폭 개정
- 법규는 각 조문의 문장으로 구성되며 각 문장마다 완결성을 지녀야 함은 물론 문장 상호 간에도 연결이 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위 조례 제2조는 조 제명이 정의이기 때문에 각 호의 내용은 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를 정한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지만 조 본문에서 그러한 점을 명시해야 함
- 각 호를 규정할 때에는 항상 각 호의 내용을 아우르는 지시문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규정해야 함
- 이러한 요소는 법규의 외부적 체계와 관련되는 문제임
- 다음으로 위 조례 제10조와 제11조는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한 것인데,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요구는 시정명령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창설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시정명령은 이미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까지를 포함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여기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음
- 그런 점에서 위 조례 제10조와 제11조는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다시 반복하여 규정한 것이고 이러한 반복규정은 입법기술상 불필요한 규정임(위 조례에서 규정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문들을 이해하려면 상위법률의 관련 조문을 함께 살펴 보아야 함은 당연한 것임)
- 그러나 실제 주민들이 조례만 접하고 위반에 대한 조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관련사항을 안내하는 것도 전혀 의미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71.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제명 - 띄어쓰기

2) 제2조

제2조(정의) 1. “교통관리계획”이라 함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종합 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교통처리계획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교통관리를 말한다.
2. 3. (생략)

(1) 개선사항

규칙 제2조의 규정형식이 각 호 앞의 설명문이 없이 바로 각 호가 나오는 등 입안 심사기준에 위배되어 외부적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관리계획”이라 함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교통처리계획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교통관리를 말한다.	[이하 각호 생략]
2. “교통처리계획”이라 함은 교통관리계획의 한 단계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3. “기본계획”이라 함은 위치도,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및 안내표지 등 설치계획에 의하여 작성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1) 제4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통할한다.

(1) 개선사항

"통할한다" 라는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이기도 하여,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참조하여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수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통할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

추가적 검토

- 〈현황〉 마을버스 노선별 운영 및 이용 데이터, 위원회 구성 및 활동 데이터
- 〈정책 제언〉 공익성과 운송기능성 및 비용효율성 그리고 서대문구 특성을 잘 담아가도록 노선운영 및 이용 데이터 기반 합리적 노선재구성 및 재조정 고려

7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서대문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심을 갖는다면, 일차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요인 분석과 보다 나은 여건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종합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임

근본적으로 자전거 이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차량과의 추돌충돌 위험이므로, 자전거 정책은 자동차 정책과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그 성과가 나기 힘들

서대문구가 전국 최고 자전거도시를 지향한다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 외에 차량 속도 제한 및 진입 제한, 생활영역에의 접근성 제고 등 보다 획기적인 자전거 이용시스템을 도입해 볼 수 있음

2) 참고

인구가 밀집한 서울특별시 및 서대문구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와 간선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나 이면도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매우 바람직한 **친환경 건강증진 이동수단의 생활화**이기도 하며 이를 목표로 할 때 그 방향성과 효과성이 증대될 것임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환경 조사
- 〈정책 제언〉 획기적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전거 중심도시 정책 목표 검토

74. 서울특별시서대문구Green-Parking2006조성사업주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 전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차난으로 인하여 슬럼화 되고 있는 주택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차정책 종합화, 커뮤니티 도로조성, 주민 자율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동 ○○지구 주민추진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앞 서 본 것처럼 이 규정은 자문단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무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2) 제명 - 띄어쓰기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Green-Parking2006조성사업 및 주민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데이터
- 〈정책 제언〉 서대문구 각종 자문기관 유형 및 운영현황과 정책적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f. 기획예산과

7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1) 제7조

제7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1) 개선사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2015.8.1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7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 --.

추가적 검토

- 구민대상조례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광진구 도봉구 서대문구 서초구 용산구 중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울산광역시 남구 북구 총 10개 검색됨
- 대덕구는 3년 거주요건 부과
- 〈현황〉 구민제안 현황 데이터
- 〈입법 과제〉 공무원 제안규칙과 통합 검토
- 〈정책 제언〉 웹 제안시스템 구축 활성화 및 제안이후절차 통보 등

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록관 운영 규칙

1) 제2조제5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2호부터 제14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1) 개선사항

「사무관리규정」은 폐지되었고, 해당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은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개정

(2)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2호부터 제14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5.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 조----- ----- -----.

추가적 검토

- 교육청 포함 134개 검색되며,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충북 괴산군, 송파구는 조례로 규정함
- 〈현황〉 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운영 현황 데이터
- 〈정책 제언〉 서대문구 기록관리의 Full Paperless화 및 검색 콘텐츠화 차세대 지식관리 시스템 구현

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1)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 ----- ----- ----- ---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사무전결 현황
- 〈입법 과제〉 온라인 전자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 중심 전결시스템 뒷받침
- 〈정책 제언〉 데이터 중심 행정사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이를 위한 사무 프로세스 전반의 재구조화

7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1) 제26조제1항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1) 개선사항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수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

2) 제명 - 띄어쓰기

3) 참고

일괄 정비 및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기본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표준화 구조화 유형적 세분화 등을 통한 O2O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업무등평가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데이터
- 〈정책 제언〉 기능적으로 가능한 다른 위원회와의 통폐합 등 검토, 위원회 운영의 기본공통사항과 개별 사항 등을 표준화 구조화하여 지식관리

7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3조제3항

제3조(구성 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촉직 위원 : 정계·재계 인사, 교수, 법률 전문가, 연구·언론·문화·예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1) 개선사항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써 이를 허용할 수도 없으므로, 의장 개인이 심의회 위원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대법원 1996.5.14.선고, 96추15판결 참조)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구성 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촉직 위원 : 정계·재계 인사, 교수, 법률 전문가, 연구·언론·문화·예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와 <u>구의회 의장</u> 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제3조(구성 등) ③ ----- ----- ----- ----- ----- <u>구의회</u> 가-----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데이터
- 〈정책 제언〉 기능적으로 통합가능한 위원회와의 통폐합 고려

8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 제30조

제30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개선사항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바,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없음

이 조례에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에 대해서도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진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위법령에 반함. 아울러, 상위 법령에서는 보조금 교부 제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도 이에 맞추어 수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0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제3호----- ----- -----제한할 수 있다.

추가적 검토

- 〈현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데이터
- 〈정책 제언〉 보조금 지급 대상 유형과 지급규모 및 성과 등 지식관리

8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1) 전체

(1) 개선사항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11. 29. 시행)되어,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칙은 폐지 검토

2) 참고

아직 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 이천시 전라북도 김제시 익산시처럼 조례로 규정한 경우도 있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4. 5. 28.]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투자사업 현황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데이터
- <입법 과제> 입법 필요시 조례로 개정안 마련

g. 도시관리과

8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1) 제7조제3항제2호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서대문구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 의원

(1) 개선사항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써 이를 허용할 수도 없으므로, 의장 개인이 심의회 위원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음(대법원 1996.5.14.선고, 96추15판결 참조). 그러므로, 의장의 추천을 "의회의 추천"으로 수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서대문구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 의원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③ 현행과 같음 2. 서대문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 의원

2) 참고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있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있으며, 서대문구의 경우 두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도시디자인은 미관, 기능, 환경,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되 기술혁신적 흐름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명칭을 디자인 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

추가적 검토

- 〈현황〉 위원회 구성 및 활동 데이터
- 〈정책 제언〉 첨단 IOT 융복합 미래지향 컨셉의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가능

8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1) 제5조 및 제8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와 별도로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인데 추진체계에 해당하는 기본계획과 위원회 설치 운영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체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u> [이하 생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u> [이하 생략]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각호 생략]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자인위원회가 겸한다.	제8조(디자인위원회의 기능 확대)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자인위원회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각호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자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삭제>

2) 참고

서대문구의 경우 도시 디자인 조례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디자인 위원회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겸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함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디자인위원회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통합운영 데이터

- 〈정책 제언〉 범죄 취약지구 데이터 관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입법 과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양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h. 사회적경제과

8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농어촌과의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도농상생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관련 상위법령이 있고 자치입법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규범적 뒷받침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조항에서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인용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농어촌과의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도농상생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 -----..

2) 제2조제3호나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우수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1) 개선사항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2. 6.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므로, 「친환경농어업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3. “우수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3. ----- ----- ----- ----- ----- 「친환경농 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

3) 제16조제2항

제1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급식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1) 개선사항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자치입법권을 가짐

「지방자치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지만 이론적으로 보아 기초와 광역의 자치법규는 각각 자기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고 공동사무라고 해도 각자 분담한 사무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기 때문에 양자는 상하위관계에 놓여 있지 않음

위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상급자치단체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설령 서울특별시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행하고 유사한 내용의 자치법규가 존재하더라도 서대문구에서 그 자치법규에 따를 필요는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 위 조례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할 것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급식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② ----- ----- ----- ----- 등에 따른다.

4) 참고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추가적 검토

- 서울특별시와, 금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에 조례 있음
- 제6조(공공급식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을 두고 있는데, 15인 성비 60% 등 조정 고려
- 제7조제3항 협치조정관 위촉여부 및 활동 확인
- 지방자치법 제9장 제116조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있어서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와 똑같이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것처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도 줄여야 함
-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법 제24조는 같은 법 제9장의 여러 조문과 함께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황〉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유형과 지원현황 데이터, 공공급식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적 등 데이터
- 〈입법 과제〉 공유주방 급식 관련 선도조례 제정
- 〈정책 제언〉 공유주방 기반 급식 다양성 구현, 관련 학과와 식당 연계 검토

8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1) 제18조제3항

제18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1) 개선사항

조례 제18조제3항은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규정하나, 추세는 온라인이므로 전자정부법을 반영하여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8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u>서면</u> 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 ----- <u>서면</u>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참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조례 내용도 비교적 충실한 편이지만, 다른 국가와 지방 입법 전반이 그렇듯 하드웨어적 조직구성 중심, 공급자 중심, 오프라인 서면 중심, 비정형 중심 등의 한계를 안고 있음

사회적 경제의 성공조건인 하나로 생산-유통-판매-소비-피드백 환류 등 통합 사이클에서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효율적 네트워킹을 통한 다기능 민관산학연 연계연동 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에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IT 융복합 구현이 필수적이고 비정형 종이문서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임을 유념할 필요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 추진 데이터
- 〈정책 제언〉 데이터 중심 PASS+S 시스템 구축

I. 세무과

8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1) 제2조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2. 4. 4, 개정 2015. 5. 12.)

(1) 개선사항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를 반영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 6. 10.〉 〈개정 2019. 4. 1.〉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9. 5. 30.)

2) 참고

가평군 강릉시의 경우 2019.5.15.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관련 내용을 개정신설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도세와 시세가 다르므로 양자의 중복성 문제가 있다면 조정 이슈가 됨

서울특별시의 경우 제3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5조 공연장에 대한 감면 제6조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제7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제9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10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12조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제13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제15조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제1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규정함. 위 고딕은 서대문구와 중복됨

마포구의 경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과 준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내 도시형공장(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둠.

참고로 강진군 군세 조례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규정함(강진군은 한옥 지원 조례도 제정함).

서대문구 구세 조례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만을 규정함

추가적 검토

- 〈현황〉 다양한 감면 사유 중 서대문구에 불필요한 것 또는 필요한데 미규정 있는지 현황 데이터 검토
- 〈입법 과제〉 서대문구 각종 구세 조례 통합여부 고려
- 〈정책 제언〉 서대문구 만의 세원 세목 필요성 검토, 지방세 부과-징수-구제 선도모델로 서 기술혁신적 전자과세시스템 기획 R&D 및 국가과제로 시범사업

8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1) 제3조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1) 개선사항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제한)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3항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3조는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되 서대문구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적 기준 마련 가능

2) 제4조

제4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시세를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개선사항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2항은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있는데, 조례 제4조는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되, 서대문구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적 금액 세분화 기준 마련 가능

추가적 검토

- 〈현황〉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
-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 참조
- 〈입법 과제〉 2017.12.26. 징수법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규정이 신설 되었으므로 조례에 반영 필요

8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상위법령 또는 조례를 인용할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규율내용을 위임한 경우, 그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조·항·호를 명시하며, 실체근거조항과 위임근거조항이 서로 다른 조에 규정되어 있는 등 실체근거조항만 인용하는 것이 불명확하면 실체근거조항과 위임근거조항을 함께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2)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1) 개선사항

상위법령 또는 조례를 인용할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규율내용을 위임한 경우, 그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조·항·호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 ----- ----- ----- -----.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1. <u>법 제88조</u> ----- -----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 ----- -----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3. ----- ----- -----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4.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6.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7. ----- ----- -----

3) 참고

국민의 민원처리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을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구분하여, 일반민원은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고충민원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으로 정의하고 있음

위 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함

이처럼 실정법상 용어정의가 법률마다 다르게 되면 용어혼란 내지 법적용과 해석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관련 입법 행정 사례 판례 등의 검색 통계분석 데이터 기반 법률콘텐츠 구축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실정법상의 용어정의는 국민의 법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용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규범체계 전체의 정합성을 추구해갈 필요가 있음

추가적 검토

- 시행규칙과 함께 모든 지자체가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조례안을 따른 듯
- 대표적인 침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규정한 조례로서 실효적 규범력 있음
- 〈현황〉 서대문구 납세보호관 및 납세자보호 실적 데이터
- 〈입법 과제〉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규칙과 통합 검토
- 〈정책 제언〉 납세자보호 사례데이터 검색활용 지식관리 바람직

8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1)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세(이하“지방세”라 한다)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무조사에 관한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이를 인용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세(이하“지방세”라 한다)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0조----- ----- ----- ----- ----- ----- -----.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세무조사”라 함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개선사항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무조사에 관한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조·항·호를 명시함이 바람직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에 대한 인용근거로, 「지방세기본법」 제11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 인용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1.“세무조사”라 함은 <u>법 제64조</u> 의 규정에 의한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u>조세범처벌절차법</u> 에 의한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1.-----「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 ----- 「지방세기본법」 제113조부터 제126조----- -----.

3) 제19조

제19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기한내에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당초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개선사항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을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재기재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9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기한내에 <u>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당초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제19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별지제3호서식

(1) 개선사항

이 규칙 별지제3호서식에서 「지방세법」 제64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무조사에 관한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이를 인용

5) 제명 - 띄어쓰기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세무조사 데이터
- 〈정책 제언〉 세무조사 데이터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90. 서울특별시서대문구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1) 전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 제67조 제2항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자에 대한 교부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서 탈루·은닉세원을 찾아내어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칙 폐지 검토

2) 참고

25개 지방자치단체만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을 두고 있으며, 1983년도나 1986년도 제정 이후 그대로인 경우도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8년 개정된 경우도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탈세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데이터
- 〈정책 제언〉 탈세 유형의 세분화 데이터 관리를 통한 사전사후적 지식기반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 및 고도화

j. 안전치수과

9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대문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구로구나 광주광역시처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도 좋을 것임

참고로 광명시처럼 생활안전보험이라는 표현도 있으며, 구로구의 경우 재외동포를 가입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

-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대문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대문구 구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참고

광주광역시 조례는 보험기관 등에 공제회를 포함시켜 공익성을 제고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민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와 보험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등”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예산 및 가입현황 데이터
- 〈입법 과제〉 서대문구 거주자의 유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필요시 가입대상에 반영
- 〈정책 제언〉 지방재정공제회나 사회복지공제회와 같은 기관을 보험기관 등에 추가 고려

9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1) 전체

(1) 개선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던 중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2016.01.27.)되어 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이 재해영향등의 평가협의로 바뀌었고, 해당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전에는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폐지 및 신설 조례 제정 등 검토

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 참고

아직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를 두고 있어 미개정 상태이며, 가평군 광주시 계룡시 구리시 남해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음

서울특별시의 경우 양천구와 종로구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음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1.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18.

12. 31. >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존치 여부
- <입법 과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검토
- <정책 제언> 서대문구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등의 지식맵 구축

9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7조제2항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선사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로 개정되어 2016. 12. 23.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② ----- ----- -----「실내공기 질 관리법」----- ----- -----.

2) 참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조례는 지진피해 발생 이후의 위험도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진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건물안전도 및 내진설계 정도 등 사전 지진위험 조사와 연계하여 예방적 대응체계를 실효화하는 것도 바람직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건축물 안전도 및 내진설계 데이터
- 〈정책 제언〉 종합체계적인 토목 건축물 사전사후 안전관리시스템 지향

9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1) 전체

(1) 개선사항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2007.9.27)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부과·징수등의 절차에 관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됨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시나 군의 경우 해당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와 같은 경우 광역 관리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가 이를 정하고 있고 개별 자치구에서는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

2) 참고

1999.10.11. 제정되었으며, 위 명칭의 규칙은 서대문구에만 남아 있음

추가적 검토

- 〈입법 과제〉 폐지 및 필요시 실태에 맞게 개정 검토

k. 일자리경제과

9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4조제3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③ 위원은 주민자치국장과 복지문화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개정 98. 10. 7, 2006. 10. 31, 2010. 10. 1, 2011. 8. 10, 2012. 6. 13)

(1) 개선사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기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 구성) ③ 위원은 주민자치국장과 복지문화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③ <u>현행과 같음</u>
④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u>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대문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2) 참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위원회 남녀 구성비율 데이터
- <입법 과제> 관련 자치법규 일괄 개선
- <정책 제언> 각종 위원회 전문 인력 풀 확보

9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1) 전체

(1) 개선사항

생활임금 산출에 필요한 자료인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주택전월세 실거래 자료 평균 값」은 주택전월세실거래가액을 가공한 자료로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시기에 맞춰 자료를 제공하므로 그 시기에 맞춰 생활임금 고시 일자를 늦출 필요가 있음

2) 참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2.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개정 2019. 06. 03.〉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생활임금 현황 데이터

9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1)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이하 "신지식산업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설의 주 활용 목적에 부합하면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2019. 6. 5. 전부개정 됨에 따라 “신지식산업센터” 시설명칭을 “창업지원센터”로 변경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이하 "신지식산업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참고

제명 및 전체 내용 변경 필요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데이터
- 〈정책 제언〉 창업지원 개별프로그램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한 완성도 제고 및 지식화

9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1) 제3조제4호

제3조(기금의 용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

4.「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으나, 「물환경보전법」으로 2017. 1. 17.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용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	제3조(기금의 용자대상의 선정기준) 현행과 같음
4.「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	4.-----「물환경보전법」----- ----- -----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중소기업 현황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데이터
- 〈정책 제언〉 서대문구 중소기업 유형화에 따른 선택과 집중 및 맞춤형 기금운용

I. 자치행정과

9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 참고

사용 이용 용어 통일 필요

공공시설의 이용 내지 사용은 장기지속적 독점배타적이 아닌 일시적인 것이 보통의 모습이므로 강학상 일반사용 내지 허가사용에 해당하며, 공공시설 이용권은 각종 지방세와 공과금을 납부하는 주민의 권리 중 아주 중요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조례 제7조가 이용자격을 서대문구에 한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소재 학교 직장 단체 등으로 하였다면 광역 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규정이라 할 수 있음

경기도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7조, 제2장 광주시 개방공간심의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제8조(구성)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촉 해제) 제12조(간사 등) 제13조(회의)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5조(수당 등) 제3장 개방공간의 사용 제16조(사용자격) 제17조(사용기간) 제18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9조(우선사용) 제2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제21조(사용허가 취소정지 등) 제22조(고지) 제23조(사용료) 제2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25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의무) 제26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2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4장 소위원회의 권리구제 제28조(권리구제 소청) 제29조(권리구제 소청 처리절차) 제30조(준용규정) 제31조(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시행규칙 및 별표 별지서식도 마련되어 있음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민간개방 이용 공공시설 현황 데이터
- 〈입법 과제〉 서대문구 공공시설 개방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반영에 따른 선도 입법 가능
- 참고로 시행규칙과 구청장의 규칙 제정, 운영세칙과 위원장의 규정 제정 통일 필요
- 〈정책 제언〉 영국 런던 ALS 도서관처럼 민관학 연계 개방공간 확대방안도 고려, 서대문의 학문연구 창의도시 특성화 및 창의적 스타트업 지원 기능을 HW SW NW C&S 모델링을 통한 지식관리시스템으로 구축 제공

1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1) 제7조제3항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서대문구청의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5인과 관내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1) 개선사항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써 이를 허용할 수도 없으므로, 의장 개인이 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음(대법원 1996.5.14.선고, 96추15판결 참조). 그러므로, "의장이 추천하는"을 "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안으로 개정 검토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서대문구청의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5인과 관내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③ ----- ----- ----- 구의회에서 ----- ----- ----- -----.

추가적 검토

- 제4조(상의 종류와 인원) 4. 특별활동(송재) - 송재 표현 검토
- 제10조(간사와 서기) - 서기 표현 검토
- 〈현황〉 구민대상 현황 데이터

1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17조제4항

제17조(구성 등) ④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선사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40% 이상이라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60%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어 상위법률과 상이한 결과가 되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7조(구성 등) ④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u>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17조(구성 등) ④ ----- ----- ----- ----- ----- ----- ----- 특정 <u>성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2) 참고

대학이 많은 서대문구가 학문 교육 도시를 표방하는 것과 상응하여, 구정에 이들의 전문적 창의적 에너지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회에 학계 내지 대학교수나

관련 학과생 등을 포함하는 일괄 법제개선을 고려

추가적 검토

- 〈현황〉 자치회관 설치 운영 현황 데이터
- 〈정책 제언〉 자치능력의 획기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식시스템 도입

10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명의 결정 및 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u>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 」 제91조 및 같은 법 <u>시행령 제88조</u> ----- ----- -----.

2) 제3조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개선사항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비추어, "회무를 통리하며"를 "사무를 총괄하며"로 개정 검토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사무를 총괄----- -----.

3) 제5조제2항

제5조(회의 및 의사)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 개선사항

앞서 본 것처럼 가부동수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결로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회의 및 의사)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② ----- ----- -----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제명 - 띄어쓰기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자연지명 행정지명 역사지명 지표물지명 등 지명 관련 데이터
- 〈입법 과제〉 제정 후 20여년 지난 조례의 디지털 지명관리 입법으로의 업데이트
- 〈정책 제언〉 지명데이터의 체계적 기록관리 및 융복합 디지털 코드기반 콘텐츠화

m. 재무과

1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 제2조제1항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개선사항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하고 있으나 종로구처럼 7명 이내로 하는 경우도 있어, 위원회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줄일 필요는 없는지 검토

2) 참고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는 시행규정을 위원장이 아닌 시장이 정하도록 함. 광주광역시 북구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위원수가 대구광역시의 경우 5-10 대전광역시 7-10 대덕구 10명 이내 수원시 15명 이내 남원시 15명 이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7명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위 조항 제11호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를 주민 감독 대상 공사로 할 수 있도록 함

추가적 검토

- <현황>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 및 주민감독대상 공사 데이터
- <입법 과제> 위원수 조정,과 함께 소위원회 필요 여부 점검 후 입법에 반영
 - 서대문구 상황을 고려한 주민감독대상 공사 추가 필요시 조례에 반영
- <정책 제언> 서대문구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주민감독 대상 공사로 선정

1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1) 제5조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개정 2010. 10. 1)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개선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에서는 대장의 작성·관리의무만을 규정하고 조례에서는 서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위임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대장의 서식의 주요 항목 등 대장의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거나, 조례 별표에서 서식을 정하는 것도 고려

2) 제7조제2항

제7조(실태조사)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1. 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실태 (개정 2014. 5. 13)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불법 무단사용 여부 (신설 2014. 5. 13)
4.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4. 5. 13)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개정 2014. 5. 13)
6. 원상변경 여부 (개정 2014. 5. 13)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개정 2014. 5. 13)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5. 13)

(1) 개선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4., 2018. 12. 4.>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조례에서 반드시 법령을 재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재기재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실태라는 막연한 표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주위 환경, 이용 현황으로 구체화하는 것도 고려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실태조사)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 ----- -----.
<신설>	1.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주위 환경, 이용 현황 등 관리실태
1. 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실태	2. -----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불법 무단사용 여부
4.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
4. -----
5. -----
6. -----
7. -----
8. -----
9. -----

3) 참고

규칙 명칭을 구유재산으로 하고 있어 공유재산으로 제정된 조례와 명칭을 일치시킬 필요

추가적 검토

- 규칙 제35조(준용규칙)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 4. 14)”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양천구 규칙의 경우 제54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고 개정(2018.06.18.)하였으며, 대부분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어 서대문구의 경우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
- 〈현황〉 서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관리 현황 데이터
- 〈입법 과제〉 구유재산 규칙은 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명칭 이하 전면 개정 고려

10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1) 제16조

제16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1. 12. 17)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인감증명서
7. 교환승락서
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 개선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1조는 2016.11.29.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1조를 삭제하고 다른 지자체처럼 인감증명서도 삭제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6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 ----- -----.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 첨부)	1. ----- -----
2. 교환사유서	2. -----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3. ----- -----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서	4. -----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5. -----
6. 인감증명서	6. (삭제)
7. 교환승락서	7. -----
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8. -----

2) 제18조의2

제18조의2(가산금) 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고지는 별지 제29호로 한다.

(1) 개선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서 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인용이 필요함. 그러므로, 영 제86조 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로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8조의2(가산금) 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고지는 별지 제29호로 한다.	제18조의2(가산금) -- 제82조----- -----.

3) 제명

이 규칙은 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규칙의 상위법규인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2010. 10. 1. 개정되었음. 그러므로 시행규칙 제명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 개정 검토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현황 데이터
- 〈입법 과제〉 각종 서류 절차의 paperless 행정구현을 위한 선도 입법
- 〈정책 제언〉 서류 간소화 절차 간소화 및 온라인 모바일 시스템 구현 정책 도입

10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1)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규칙의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2010. 10. 1. 일부 개정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u>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u> 」----- ----- -----.

2) 제명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시행규칙」으로 수정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현황 데이터관리
- 〈정책 제언〉 시장원리와의 조화 속에 공유활용 내지 공유경제 접목 가능한 청사 공원 도서관 등 공공자원과 영업장 자동차 재능과 지식 등 민간자원 DB화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서대문구 지역 강점과 인적 추진능력을 감안한 공유경제 내지 사회적 경제 마스터플랜 작성

10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 조례

1) 제2조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1) 개선사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리 등에 관한 제도의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 -----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리 등 업무, 그 밖에 ----- ----- -----.

2) 제명 - 띄어쓰기

추가적 검토

- 〈현황〉 인감증명서 발급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통계
- 〈정책 제언〉 Paperless Administration 으로의 전환 고려

n. 주택과

1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 ----- ----- ----- -----.

2)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사용 검사 등에 관한 내용은 「주택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주택법」 제49조로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주택법」제49조 ----- ----- ----- -----.

3) 제4조제1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주택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으로 개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제4조(구성)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
--	-----------------

4) 제4조제3항

제4조(구성)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개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임기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위배 소지가 있음. 그러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맞게 2년으로 개정 검토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구성)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구성) ③ ----- 2-----.

추가적 검토

- 공동주택 관련 조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음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의 경우 명칭을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도 고려
- 〈현황〉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데이터
- 〈입법 과제〉 현재의 3개 조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마련 검토

10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65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 입주민과 단지 내 근로자의 소통과 상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담 간접 배제 등에 관한 조항임. 본 조례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 입주민과 단지 내 근로자의 소통과 상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포괄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65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 입주민과 단지 내 근로자의 소통과 상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동주택관리법」에 ----- ----- ----- ----- ----- ----- -----.

2)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

어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고 하나 여기에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추가적 검토

- 〈현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와 중복중첩 부분 있는지 확인
- 〈입법 과제〉 공동주택 관련 3개 조례 통합여부 검토
- 〈정책 제언〉 서울특별시와의 기능적 협업 논의

o. 지역활성화과

1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4조

제4조(권리) 서대문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1) 참고

거제시나 경기도 조례처럼 서대문구 조례와 같이 권리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권리는 법적 힘으로서 법령에 권리를 명시하는 것은 창설적 확인적 선언적 의미 중 가장 강하면서도 직접적인 표현이라 할 것이므로, 권리명문화의 의미를 감안하여 서대문구 관련 현황과 규정 취지에 맞게 조문내용과 입법방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2) 제20조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 (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div$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1) 참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동소이한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임

서울특별시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서대문구와 내용적으로 중복되고, 특히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서대문구 조례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조례 제27조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전체와 서울특별시 내의 서대문구라는 지역적 광역성과 개별성을 감안한 상호 권한과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논의 및 입법분담 협의가 필요할 것임

서대문구 공용주차장 설치 등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조례 제20조 건축규제 완화 필요성 타당성 검토 내지 재조정도 고려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등 관련 데이터
- 〈입법 과제〉 서대문구와 서울특별시 조례 상호관계
- 〈정책 제언〉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흐름을 감안 첨단 IOT 융복합 미래지향 도시재생 마인드 필요

p. 지적과

1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칙

1) 제2조

제2조(구성)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세무서 관계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 개최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0. 7. 30)

(1) 개선사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2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위원은 개발이익환수제도·재정세무회계·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인·허가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토지공법이나 세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규칙의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소 불일치하여 수정보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세무서 관계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 개최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2조(구성) ② ----- ----- ----- <u>개발이익환수제도·재정세무회계·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인·허가 담당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토지공법이나 세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u> ----- -----.

2) 참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 국토교통부훈령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를 설치 근거로 함. 제21조(설치) “법 제23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훈령상 ‘둔다’로 규정하나, 결손처분 심의할 일이 없으면 굳이 둘 필요가 없음

김포시가 서대문구처럼 운영규칙으로, 논산시 원주시 인천광역시 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규정은 검색되지 않음

추가적 검토

- 임기에 관하여 김포시 규칙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는 당연직 내지 공무원은 재직기간, 위촉직은 2년으로 규정하고, 논산시 조례는 2년, 원주시 조례는 3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는 서대문구와 마찬가지로 회의시 위촉 및 해촉 규정을 두어 비상설 운영을 함
- 홍천군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 실효성이 낮고 개최실적이 저조한 홍천군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사안발생시 위원 위촉 및 심의 의결후 자동해촉 등 비상설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음(?)
- 〈현황 분석〉 서대문구의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데이터
- 〈입법 과제〉 실제 운영 현황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폐지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 훈령에 위원회 설치근거를 두는 것은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필요하다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리상 바람직(상위법 개정)

1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1) 제8조제1항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 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7)

(1) 개선사항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이 아닌, 별지 제14호 서식에 해당되므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 ----- 건물 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 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 ----- ----- -----제14호 서식----- -----.

2) 참고

지번주소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를 도입하였으나, 인터넷 융복합 혁신을 감안하면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 주소명만이 아닌 디지털 코드화된 주소체계이므로, 지번주소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디지털 코드를 결합시키는 것이 좋았을 것이고, 도로명주소를 병행하더라도 디지털주소가 이들을 백업하는 시스템이라야 할 것임

인터넷주소와 도메인 관계처럼 지금부터라도 지역과 건물 등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지식기반 디지털 코드 부여 및 IOT 관리를 통하여 토지 건물 도로 시설 등 지역 자원을 지식DB화하는 것이 서대문 경쟁력 제고에 일조할 것임

추가적 검토

- 거의 모든 지자체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둬
- 〈현황〉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설치운영 데이터 및 도로명주소체계의 개선이슈
- 〈정책 제언〉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의 지식기반 디지털코드화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q. 청소행정과

1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1) 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1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0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8.)

제11조의2(수수료의 강제징수)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12. 30.)

(1) 개선사항

“명령권은 강제권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행정법 법언을 감안하면, 상위법령의 명시적 위임 없는 가산금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그동안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아 왔기에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추후 상위법 개정으로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추가적 검토

- 하수도법은 생활필수행정인 하수분뇨처리에 관한 중앙과 광역 지방간 책임분담내용을 잘 보여주는 좋은 입법례임
-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법이 인정한 **초과조례**
-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상한법**
- 〈현황〉 서대문구의 수수료 부과 및 체납징수 현황 데이터 참조

- 〈입법 과제〉 위법소지 제거 차원에서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 마련(상위법 개정)
- 〈정책 제언〉 수수료의 전자적 부과고지 및 납부 제도 도입

1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1) 참고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현황 데이터
- 〈정책 제언〉 서대문구 화장실 자원을 공유촉진과 접목 가능
 - 서대문구 화장실 관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IOT 접목 스타트업 사업 가능
 - 서대문구 공유화장실 맵 어플 서비스

1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9조제4항제2호

제9조(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1) 개선사항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써 이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의장 개인이 심의회 위원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음. (대법원 1996.5.14선고, 96추15판결 참조) 그러므로, 의장을 의회로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u>의장</u> 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 <u>의회</u> 가 ----- -----

2) 참고

광주광역시 구미 김해 등 조례를 둔 지자체가 몇 개 안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

대문구만 조례를 규정함

김포시의 경우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둠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의해 한강신도시 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지역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도 근거로 규정함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지역인 구미시 산동면(이하 “면”이라 한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추가적 검토

- 〈현황〉 위원회 구성 및 기능 통합운영 현황 데이터
- 〈입법 과제〉 서대문구 조례에 어느 한 쪽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과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규정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일
- 〈정책 제언〉 서대문구 모든 조례DB 관리 필요 - 조례 일련번호만이 아닌 코드화 중요

1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상위법령이 있는 경우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조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을 인용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 ----- ----- ----- -----.

2) 참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배출 데이터
- 〈정책 제언〉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 시스템 업데이트, 특히 수거인력의 인권복지 강화

1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해당 조례의 목적조항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용할 필요가 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

2)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1) 개선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신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을 인용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 ----- ----- ----- ----- -----.

3) 제3조

제3조(기본계획)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개선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으로 변경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기본계획)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 -----.	제3조(기본계획)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 -----.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자원순환 유형과 성과 및 장단점 데이터
- 〈정책 제언〉 생산-유통-소비-배출-재활용-재순환 등 사이클 전체를 아우르는 모델링

1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1)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으나,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물환경보전법」----- ----- ----- ----- -----.

2) 제2조제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 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따라 5톤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파쇄물, 폐블록, 폐아스콘, 폐목재, 폐유리 및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1) 개선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의한 건설폐기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u>"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 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따라 5톤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파쇄물, 폐블록, 폐아스콘, 폐목재, 폐유리 및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u>	5. <u>"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u>

3) 제5조제2항

제5조(서대문구의 책무)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선사항

법 제9조제2항은 삭제된 조항이며,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서대문구의 책무) ② 구청장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서대문구의 책무) ②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41조제1항제1호

제41조(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

(1) 개선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은 삭제된 조항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수급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2)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1조(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	제41조(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1. -----제2조제2호----- -----

5) 참고

「폐기물관리법」은 토지나 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토지나 건물 청결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행령 별표 2.나.는 1차 2차 3차 불이행시 각각 30만원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법령과 조례 규정은 아래와 같음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3항제2호)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청결명령 이행제도)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④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법 제14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⑤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그 징수 절차는 제6장을 준용한다. (개정 2011. 8. 10)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조례 제42조에 따라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14.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법 제8조제3항)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위 조문들에서 보듯 조례와 규칙으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시행령이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조례로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상황과 지역의사를 반영하여 지역 나름대로 조례에 의한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으로써 그 의미가 적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에서 보면, 대부분의 조례가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불이행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다시 부과기준을 규칙에 위임하면서 정작 규칙 역시 필요한 조치의 유형적 구분없이 시행령이 정한 1차 2차 3차 위반시의 과태료 금액을 똑같이 정하고 있는 현실임

조례와 규칙이 위에서 언급한 필요한 조치의 구체화를 한다면, 자치입법권 행사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조치 유형별 과태료 부과도 차등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례가 이를 정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개별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적극적 보장의 의미가 될 수 있음

위와 같은 상위법령 개정 이슈가 미해결 상태일지라도 적어도 조례와 규칙은 시행령 별표 처분기준 중 일반기준에 따른 감경규정을 근거로 나름의 감경사유와 감경유형을 구체화하여 이를 정함으로써 최소한이나마 자치입법재량권의 적극적 행사를 통한 자치행정권 행사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청결유지 필요조치 있었는지 여부 및 관련 데이터
- 〈입법 과제〉 과태료 부과유형 구체화 세분화

119.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1) 제31조

제31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④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1) 개선사항

「향토예비군설치법」은 2016. 5. 29. 「예비군법」으로 타법 개정되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1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④ <u>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u> 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제31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④ 「 <u>예비군법</u> 」 및 「 <u>민방위기본법</u> 」----- ----- ---.

2) 참고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 전라남도 목포시와 서대문구 포함 대부분의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광역시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소속사업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 조례를 제정함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현황 및 학자금 대여 데이터
- 〈정책 제언〉 서울특별시와의 관계, 학자금 대여 외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r. 토목과

1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1) 참고

제설제빙, 제설제빙 책임, 제설제빙 책임범위 명칭 혼재, 226개 기초지자체 모두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대동소이

과거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행정벌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며, 현행 자연재해대책법도 벌칙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서대문구의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급경사 등 눈을 제 때 치우지 않음으로써 위험이 현실화되는 사고다발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한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와 실효성 확보 수단을 조례화하는 것도 시도할만함

민형사법적 문제와 달리 예방적 공중안전을 위하여 행정의무부과가 필요하며 의무주체의 순서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의무부과도 침익적이므로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동계 결빙지역 및 사고 실태 데이터 참조
- 〈입법 과제〉 인적 물적 상습피해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조례의 실효성 강화 입법 추진(상위법 개정)
- 〈정책 제언〉 상습결빙 내지 피해다발지역 지도 작성, 눈치우기 좋도록 장비지원 및 매뉴얼화 등 시스템 효율성 제고

1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1) 참고

조례제정 지자체가 그리 많지 않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행규칙을 제정한 경우는 강남구 강서구 강북구 조례 정도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 규칙 제4조(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추가적 검토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와의 관계 검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상호관계 검토
- 〈현황〉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데이터, 온라인시스템 구축활용 여부
- 〈입법 과제〉 필요시 규칙 제정

1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위임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도로법」이 2014. 1. 14. 전부 개정되어 원인자의 비용부담등에 관한 내용은 "법 제91조"로 변경되었음. 따라서 목적조항에서는 법 제91조를 인용함이 적절함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위임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91조----- ----- ----- ----- -----.

2) 제3조제1항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1) 개선사항

앞 서 본 것처럼 「도로법」 개정으로 원인자의 비용부담등에 관한 내용은 "법 제91조"로 변경되었음. 따라서 법 제91조를 인용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 ----- ----- 제 91조----- ----- ----- --.

3)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법 제90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개정 도로법은 제94조와 제69조가 근거조문이 되므로, 해당 인용 조항 정비가 필요함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 ----- ----- 제94조 및 제69조-----.

4)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 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7. 17.>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 7., 2011. 7. 28.>

제6조(권한의 위임)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환급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2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포장관리규칙

1)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2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한 내용은 「도로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제24조제1항은 「도로법」 제31조제1항으로 변경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2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제31조제1항 ----- ----- ----- ----- ----- -----.

2) 제명 - 띄어쓰기

3) 참고

보도포장 관리 규칙은 서울특별시의 위임에 의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만 있음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보도 개축 수선 유지 등 관리 데이터 지자체 비교 등)

12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안등관리규칙

1) 전체

2000. 12. 26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현재의 상황과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강동구의 경우 규칙을 전부개정였고, 조문 구성은 아래와 같음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관리자
- 제5조 관리자 등의 책무
- 제6조 보안등 관리계획
- 제7조 광원 및 등기구 등 종류
- 제8조 조도의 기준
- 제9조 보안등 설치
- 제10조 보안등의 설치높이
- 제11조 보안등의 디자인
- 제12조 보안등의 설치기준
- 제13조 신기술 도입
- 제14조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 제15조 보안등시설 유지관리
- 제16조 점·소등 운영
- 제17조 인식표
- 제18조 순찰 및 관리
- 제19조 보안등의 점검 등
- 제20조 민원접수 및 처리
- 제21조 기록관리

2) 제명 - 띄어쓰기

12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은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1조(목적) -----
-----.	-----제104조-----
	-----.

2)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개선사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건설기술 관리법은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바뀌었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를 인용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공사라 함은 <u>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u>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 ----- ----- -----.

3) 제2조제2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을 인용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감독업무"라 함은 <u>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2. -----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3항-----

-----.

4) 제명 - 띄어쓰기

5) 참고

건설기술 진흥법과 시행령을 반영하여 기준 금액 등 전반적 개정 검토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소규모공사 현황과 주요 유형 및 특성 등 데이터
- 〈정책 제언〉 주민이해와 불편완화 위해 공사일정 공정 등 상세 내용 매주 게시공고

12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정

1) 전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8 내지 제24조의14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규정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내지 제24조의14에 의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내용은 「도로법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7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 설치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 제정 고려

2) 제명 - 띄어쓰기

3) 참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충청남도 계룡시 금산군 등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충청북도 괴산군 보은군 전라북도 부안군 등이 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아직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사례가 보이지 않음

「도로법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

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의 상임이사 중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4. 시도·군도·구도: 해당 특별자치시·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제67조(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운영 데이터
- 〈입법 과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내지 규칙 제정 검토

12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기술자문단운영규정

1) 전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기간시설의 복잡 대형화에 따라 필요시 적기에 관계 전문가의 체계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자문단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규정은 자문단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무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안이 바람직할 것임

2) 제명 - 띄어쓰기

3) 참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기술자문단 설치 운영 데이터
- 〈정책 제언〉 서대문구 자문단 유형 및 운영현황과 법제 개선안 마련

s. 푸른도시과

1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3조제3항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척·회피 등, 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2조의8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른다.

(1) 개선사항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7항에서 각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회피·해임·해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까지 규정을 인용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척·회피 등, 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2조의8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 -----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

2) 참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 종래의 조문 구성체계 외에 IT 기술 접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추가적 검토

- 〈현황〉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현황
- 〈정책 제언〉 위원회 통폐합과 인력풀 활용방식 전환 및 웹기반 차세대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t. 환경과

1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1)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으로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 ----- -----.

2)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1) 개선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저장소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8조에서 인용하고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8조로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 1.“가스사업 등”이란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제3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제5조 및 제8조 ----- ----- -----.

3) 제2조제2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가스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범위에 규정된 가스시설을 말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에 관한 내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로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 2.“가스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범위에 규정된 가스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 ----- --.

4)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3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 개선사항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보호시설에 관한 내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규정하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로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3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5) 참고

1983.12.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별도 제정하였고, 2003.9.29. 일부개정 이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명칭을 갖게 됨

법 제6조제3항(2019.8.20. 개정)에 따른 필수조례이며,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드물게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명칭도 사용됨

서울특별시의 경우 강남구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서초구 성북구 중랑구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명칭으로 제정하였고, 서대문구의 경우처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명칭으로 제정한 경우는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가 해당되며, 타 지자체의 경우 고양시, 곡성군, 나주시, 동해시, 보성군, 부산광역시 남구 사상구, 여수시, 영천시, 전주시, 함평군 정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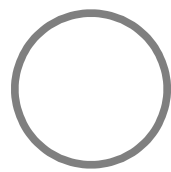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은 이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허가관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일용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강남구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와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나누어 제정하고 있으나, 조례나 규칙 내용은 단순함

추가적 검토

- 액화가스 행정은 공동체 안전과 에너지확보에 관한 국가사무이면서 지역안전과 지역 에너지복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의미에서 부분적인 기초 공동사무로도 볼 수 있음
- 가스사업 허가기준은 주민들의 안전 등과 밀접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의 관여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령에서 단체장을 행위주체로 규정하더라도 집행기관의 장의 지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고압가스의 경우에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고, 한편 위 두 법은 하나에서 분화된 성격상 유사한 법으로서 지자체가 이를 통합조례로 규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허가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상위법을 상하한법으로 개정), 분리 통합 여부에 따라 제2조 용어 정의도 달라지게 됨

- 〈현황 분석〉 서대문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유형과 현황 및 분포도 데이터 참조
- 〈입법 과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라는 요건을 구체화하는 사항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추후 조례 별표에서 이에 관한 사항 보완 검토(상위 법령과 타 지자체 조례규정 및 서대문구 현황 데이터 반영)
- 〈정책 제언〉 서대문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유형과 현황 분포도 작성 및 이를 고려하여 조례 및 별표 내용 재접근(거리제한 자본금 등 민원사례 데이터 확인 반영)



제4장 향후과제



제4장 향후과제



1. 협력적 자치입법시스템 구축

- 자치법규는 국가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면서도 부분사회의 자율규율로서 지역법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도 하므로, 전국적 규범틀의 테두리 내에서 지역특성과 지역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때 좋은 자치법규가 될 수 있음
- 지방자치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을 통한 대의제도를 근간으로 제도화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근거리 자치가 단체자치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자치 즉, 직접민주적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또 하나의 핵심요소로서 단체자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지방 행정과 재정 입법 등의 자치시스템에 녹아들어갈 때, 지역상황과 지역의사가 잘 반영되는 바람직한 자치를 향해갈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조례제정개폐청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설계하며 지역에 최적화된 법규 내용을 만들어가는 참여입법 내지 협력입법이 그것이며, 주민자치회, 이른바 자치법규 포럼과 같이 이미 있는 모임 또는 비상설협의체로서 모임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원의 실체적·절차적 매개기능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게 됨
- 서대문구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과 함께 지역의사를 형성해가면서 지역상황에 맞는 자치법규를 만들어가는 협력적 자치입법시스템을 구축해간다면, 지역법으로서의 자치입법의 내용적 당위성과 규범적 정당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확인해주는 한편, 나아가 입법분권을 통한 자치입법권의 확대 강화의 동력원도 될 것임

II. 자치입법 데이터의 구조화와 지식관리

- 협력적 자치입법시스템이 안착 성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법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관련 여러 주체들에 대하여 이해조절적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그들의 공감대를 최대한 확보해가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서대문구의 입법과정과 내용을 다양한 항목과 속성값으로 유형적 세분화 체계화하여 입법 데이터 구조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치법규의 생성 추적 검색 활용은 물론 지방정책 수립에서부터 자치입법에 의한 규범화 및 자치행정을 통한 집행, 그에 대한 품질관리와 수요자 평가 만족도 등의 정책에의 피드백 환류 등 일련의 자치법규 생애주기 전반을 지식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개별 자치입법의 지식구조화는 고퀄리티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상호비교를 통하여 각각의 입법 지식과 경험 및 노하우 등 필요한 참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분야별 인적 물적 유형별 서비스 유형별 디테일 항목을 입법 로데이터화함으로써 단순 통계만이 아닌 연관 통계 결합 통계 등 다양하고도 상세한 입법 데이터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함
- 자치입법 데이터 구조화에 의하여 체계화되고 세분화된 판단항목과 평가지표의 지식화 작업은 자치입법과정에서 산출되는 자치입법지식의 융복합 알고리즘화를 통하여 자치입법 빅데이터 분석을 고급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치입법의사결정지원시스템(LLDSS)**을 구축할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치입법 AI**를 지향하게 됨
- 서대문구 의회 의정시스템과 입법시스템 나아가 서대문구 행정시스템이 지식화된다면, 지식이 쌓일수록 서대문구의 자치입법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의 지방자치 내실화와 고도화에 필수불가결한 밑받침이 될 것이며, 서대문구 입법과 행정의 지식화를 통한 **지식입법 지식행정** 및 입법 생애주기의 시작점이자 환류점인 **정책입법 실현**에도 적지 않은 기여가 될 것임